2001-158

http://www.maf.go.kr

GOVP1200317341

관 계 규 정 해 설

총 5권중 제1권

2002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1.12

농 림 부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기증등록
2003. 9 2 6
983993
국회도서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2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2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사업
제3장 공공사업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5장 보칙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Ⅲ.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83호) 57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109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209

참고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참고 2. 고품질쌀 관련 정의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219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 221

2. 토양개량사업(자율) 282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02

4. 밭기반정비사업(공공) 3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341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77

7. 배수개선사업(공공) 393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416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9.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451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 491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 545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

12. 지역특화사업 지원(공공) 578

Ⅱ. 농업기계화 605

13. 농기계구입지원(자율) 607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649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③ 중소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88

Ⅲ. 생산 및 유통개선 705

16.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707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732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Ⅰ. 생산기반 확충 735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자율) 737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②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Ⅱ. 사육기반확충 765
19. 사료사업 지원(자율) 767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2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801
21.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827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2. 한우사업지원(공공) 850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②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③ 한우다산 장려금 ④ 한우거세 장려금
23. 가축개량사업(공공) 927
Ⅲ.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985
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987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1027
①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26.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1065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7.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12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③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8.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1140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③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지원
2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1169
① 농산물 자조금 조성 ② 축산물 자조금 조성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182
① 계약재배사업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3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196
32.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201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④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33.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공공) 1265
Ⅳ.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281
34. 축산물 품질향상(공공) 1283
① 원료돈 구매자금 지원 ② 육가공업체시설지원
③ 규격돼지·닭 출하 촉진지원
35.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293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협조합경제사업 활성화
⑤ 직거래 매취사업
36.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사업(공공) 1397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② 축산물검사
③ 가축방역 ④ 가축공제
37.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435

제4권 농촌개발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1443

38.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1445

① 대규모지구 조성사업 ② 소규모지구 조성사업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39. 농촌가공산업육성지원(자율) 1505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40.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586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1611

41. 농업·농촌 정보화기반 확충(자율) 1613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 ② 농업인 정보화 지원

③ 농촌 PC보내기 지원

42.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1629

43. 농촌활력화 사업*(공공) 1638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165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Ⅲ. 인력육성 1697

45. 후계농업인육성(자율) 1699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767

4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779

Ⅳ. 소득보전 1851

48.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853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③ 논농업직접지불제

49. 농작물 재해보험시범사업(공공) 1934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938

Ⅴ. 소득원개발 1953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955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② 녹색여가체험활동지원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2012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2029

54.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2043

Ⅵ. 생활환경개선 2051

55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2053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6.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2137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Ⅰ. 경영기반확충 2167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2169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58. 영림계획(자율) 217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218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218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19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220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보드류시설지원(자율) 2226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2245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249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시설

Ⅲ. 인력육성 2295

65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297

66. 임업전문인력육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2302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Ⅳ. 산림 복지기능 증진 2313

67.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공공) 2315

① 산림휴양공간조성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68. 산촌종합개발(공공) 2324

Ⅴ. 산림자원조성 2333

69. 해외조림사업(자율) 2335

70. 산림조성(공공) 2342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보호수 정비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여 백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 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등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조역량 제고
- ○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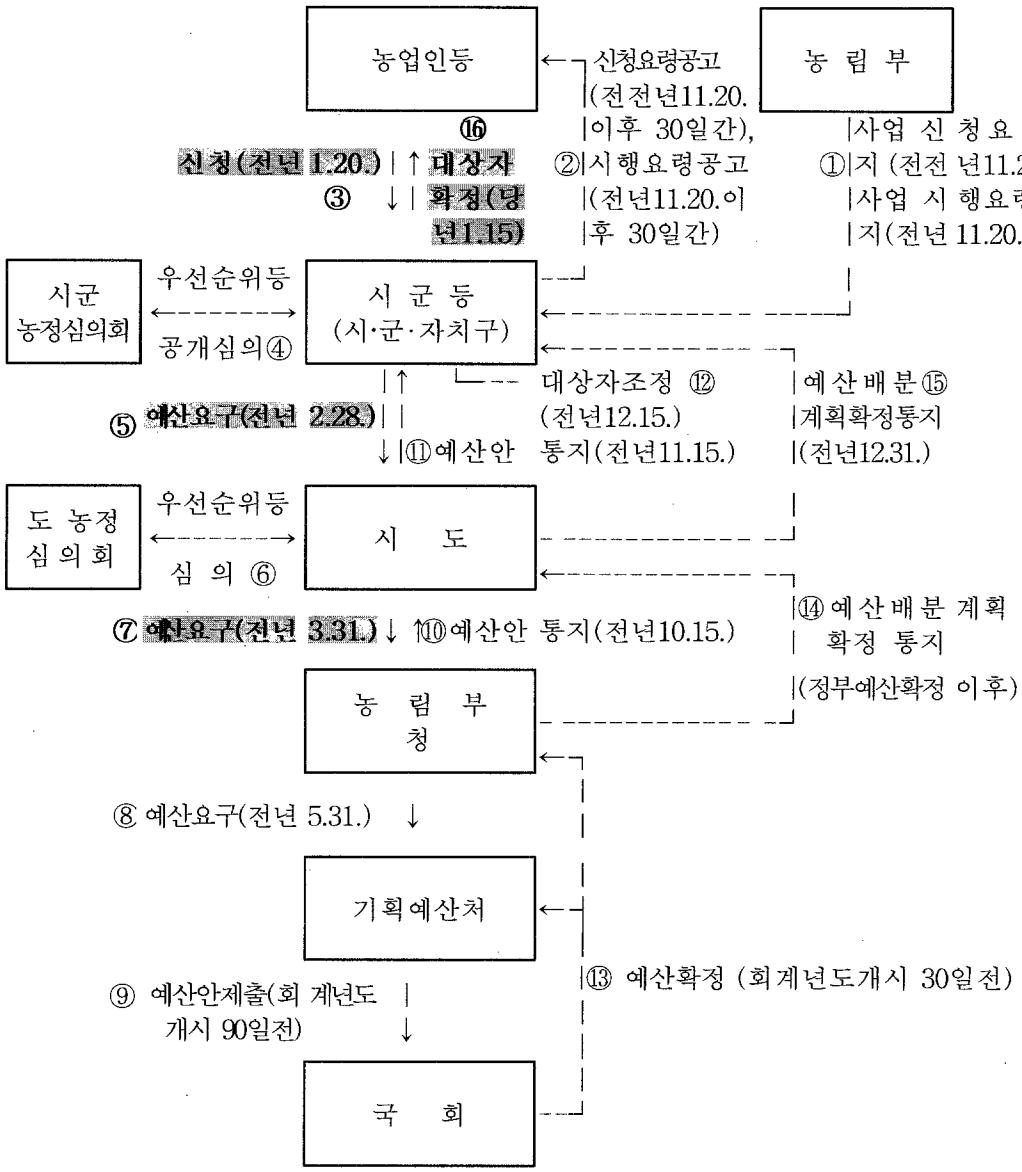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①유사사업의 통 폐 합	○99개 (자율 23, 공공 47)	○87개(자율 18, 공공 69)	○74개(자율21, 공공53)	○70개(자율24, 공공46)
② 경 영 장 부 (경영일지) 기록 의무 이행 강화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의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 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청서 심사시 지원 우선 순위에 차별성 부여 (제14조제3항) -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선 순위 부여	- 미기록 또는 현저히 기록을 소홀히 한자에게는 순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자구 삭제	-	-
③ 경 영 교 육 이수 강화	○사업신청서 심사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순위 부여 (제14조제4항)		-	-
④사업신청에 탄 력 성 부 여	○정부시책방향을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하고(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내용이더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사업시행지침에 명시 (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심의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추가사업 신청기간은 사업추진 가능여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수시 신청토록 예외 인정	-

사 항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⑤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강화	-	○농업법인을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본 규정에 명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요건을 구비하고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법인이 선정(제41조)	○나환자 정착촌 안의 분뇨처리 시설사업은 법인설립후 신청가능	-
⑥사후관리 책임보완	-	○5억원이상인 사업장은 농림부, 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 비치 -담당자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후 의견기재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인·삼협 임직원이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제39조제6항)	-	-
⑦사업자별 지원실적 공개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정부자금 지원실적 공개 (제40조)		-	
⑧고품질쌀 생산 추진				○고품질쌀생산을 유도하기위한 제도개선 및 논에 타작물 재배규제완화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제2조제1호)

(2) **자율사업**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축·임·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투자심사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됨

나. 적용범위 등(제3조)

(1)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등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2) 농림사업분류표의 내용(제3조제2항 별표1)

○ 대분류(4개)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중분류(10개)

- 공통(8개) : 생산(사육 또는 경영)기반확충, 농업기계화, 생산및유통개선, 기술개발 및 정보화, 인력육성, 소득보전,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 특별(2개) : 환경임업육성, 산림복지 및 자원조성

○ 소분류(단위사업(70개) : 자율사업 24개, 공공사업 46개

[설명] 정부예산과목의 "세항"(기금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한 그보다 범위를 넓게 설정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3조의2)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3조의2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제3조의2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시행요령에 열거되지 않은 세부사업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신청가능함을 명기함

[설명]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통상적으로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예정년도에 적용할 농림사업분류표안을 작성하여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에 통지함(정부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전년도 8. 31.까지)

※ 시행지침서에서 사용되고있는 고품질 쌀(벼)은 매년 농촌진흥청장이 미질, 식미평가를 통해 선발 추천하는 품종으로서 ①질소비료 감축 재배, 적온건조 및 적정가공 등에 의해 생산된 쌀(벼),②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벼)

③동청장이 추천하는 품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벼(쌀), ④모양,색깔 등 기타사항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품질 쌀(벼)이라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고품질 쌀관련 유권해석 기관은 식량생산국 농산과임)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5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4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 농림사업 안내기관(제8조제1항)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함(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3조의2제7항)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제4조 내지 제4조의6)

(1) 구성(19인이내)(제4조)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농업정보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2) 기능(제4조의3)

-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
-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사업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회의(제4조의4) :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경우는 2,4,7,9월의 마지막주중 각1회**에 한함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1월내에서 연기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기

  - 2, 4월은 예산요구 일정 감안
  - 7, 9월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 및 당년도 사업시행여건 변화에 대처

  [설 명]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을 제한한 것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엄격하게 적용

(4)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4조의6)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국장급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소속의 주무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제2장 자율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및 제8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요령 등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문의 형식은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함)(제7조)

○ 공고할 사항(제7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제7조제2항)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함(제7조제3항)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8조제1항)

○ 안내기관의 장은 상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 및 상담에 응함(신청자격 및 절차, 사업계획 작성, 신청자의 기술수준 등, 인·허가 사항,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2항)

나. 자율사업의 신청절차(제9조 및 제10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및 제2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해야 함(제9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9조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다음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 : 2천만원**

○ **기타사업 : 3천만원**

(3) 신청기한(제10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1조 내지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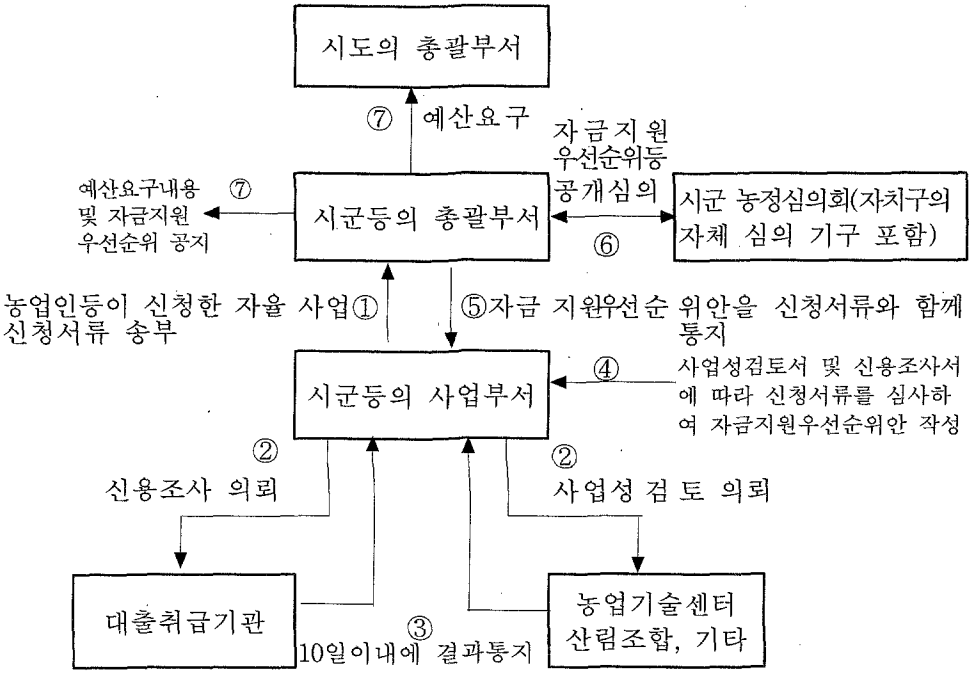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및 제2항)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축·삼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된 사업(산림청 소관)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② 신용조사(제13조 별지 제6호서식)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④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 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 구성·운영**(제14조)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 시도, 시군등, 농·축·삼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14조제3항)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에서 미이수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14조제4항)

-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14조제5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15조)

- ○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17조제3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1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 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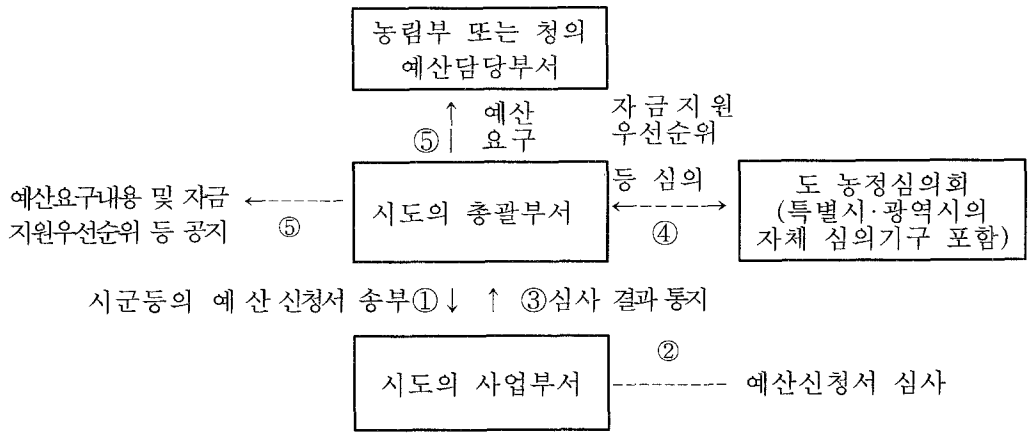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을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18조)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18조제1항)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19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1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1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1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20조 내지 제23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20조)

[설명] 정부예산 확정기한 :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일이 법정시한임. 그러나 국회사정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1조)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22조, 제2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2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2) 위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2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제3장 공공사업

가. 공공사업의 신청(제25조)

(1)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융자대행기관에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사업부서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당해일)까지 신청(제25조제1항·제2항, 제4항)

- ○ 융자대행기관 : 농협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제25조제1항)
- ○ 융자대행기관이 직접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갈음함(제25조제1항)
- ○ 공공사업 신청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의 확산 방안, 사업준비상태, 사업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제25조제2항)

(2)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함(제25조제3항)

[설명] 사업시행지를 관할하는 시군등과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당해 시군등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월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공공사업의 예산반영(제26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와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자율사업의 절차 준용)를 거쳐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1항)

(2)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공공사업의 예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율사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확정하고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예산요구를 함(제26조제2항)

(3)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함(국고는 예산청에 요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제26조제3항)

<검토할 사항 : 제2장-마-(2) 참조>

다. 정부예산안의 통지,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등 절차는 자율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함(제28조)

- 사업신청 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7조, 제8조)
- 신청서식(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신청서 심사 및 예산요구 절차**(제11조 내지 제18조)
- **정부예산안 통지 및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19조 내지 제21조)
-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공지**(제22조, 제23조)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29조)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1항 및 제2항)

- ㅇ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 ㅇ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ㅇ 경제성
- ㅇ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ㅇ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ㅇ 기대효과 등

(2)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0조)

(1)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시행 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선정을 요구함**(제30조제1항)

- ㅇ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요구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제2항)

다. 신규사업의 선정(제31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4조의4 제2항)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함(제31조제1항)

○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제31조제3항)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31조제4항)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32조) :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9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11조 내지 제13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14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15조)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다만 융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융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음(제39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서기관, 사무관)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한 후 의견을 기재토록 함(제39조제2항)
- 지원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9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9조제4항 별표2)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함(제39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축·임삼협조합(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39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축·삼협·산림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0조)**

[설명] * '94-'96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97. 1-2월중에 농·축협조합의 경영평가보고서 및 동 기간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영농준비교육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 앞으로도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지원자 명단 및 금액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할 계획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1조 별표 3)

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여 백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사용한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다만,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무거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검정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자금과에 요청후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협·삼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1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융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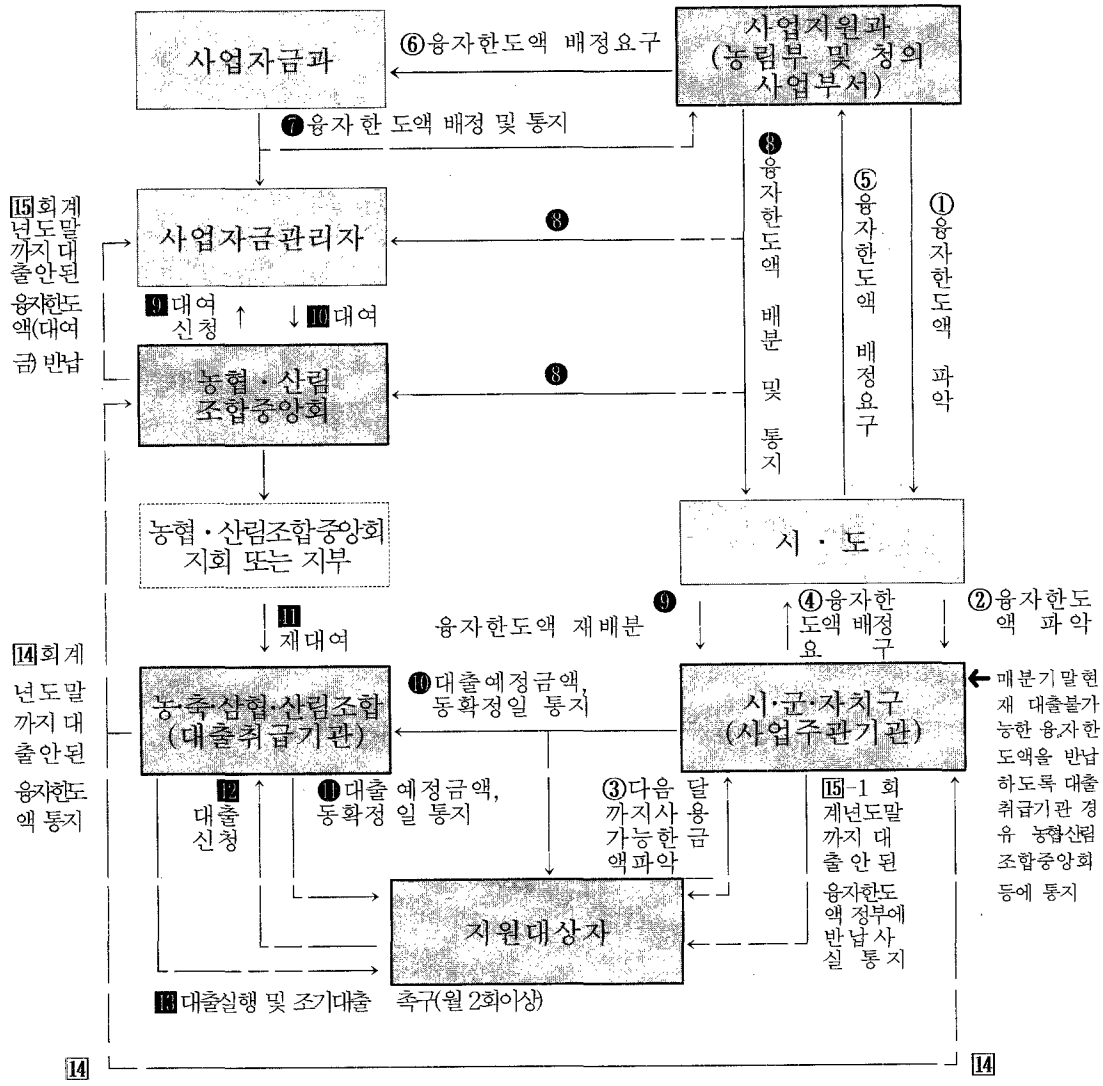

(주) ○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❽은 훈령의 제1호서식, ❾는 제2호서식, ❿은 제3호서식, 14는 제5호서식, 15-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❽의 통지가 없으면 ❾의 대여신청과 ❿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99.11.7	'99. 11.8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 자금지원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제4조 제2항)('97.예산부터 적용) - 자부담금 비율이 사업비의 20% 이상이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는 착수 시와 진척 50%시에 자부담금을 각각 반액씩 집행 - 기타의 경우는 착수 시에 자부담금 전액 집행	(좌와 같음)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 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 사업집행실적 검정 및 보조금 정산(제13조제4항)	(좌와 같음)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 제외	-	-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 제외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부당 사용 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의 비율에 따라 4개의 제재기준으로 구분함(제16조) - 10억원 이상 50% 이상 : 5년간 지원 안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5-10억원 미만 30-50%미만 : 3년 - 1-5억원 미만 20-30%미만 : 2년 - 1억원 미만 20% 미만 : 1년 * 2년 이상의 경우 기여도 또는 정황에 따라 개별규정에서 50% 단축 가능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 중 무거운 것을 적용	(좌와 같음)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 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99.11.7	'99.11.8이후
④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지원대상자의 신청 없이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시기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사업지원과가 『시도→시군→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융자한도액 잔액 기준으로 관리(관행) -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대출 지연의 요인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 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⑦융자금 예산의 이월사용	○예산 이월 조치 없이 융자금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내에 사용 가능 - 융자한도액 배정이 안된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여가능 -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다음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가능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제5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내에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대여된 금액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하여야 함(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99.11.7	'99.11.8이후
⑧대출기한도래전에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반납 - 반납시 일률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이자(제8조6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⑨ 대출기한	○예산 계상 년도의 다음 연도 말(융자종결기한 폐지)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 반납 - 대여일부터 반납일까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1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4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2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적용(제10조제3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3항제2호)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사 항	'97. 12. 31.이전	'98. 1. 1.~ '98. 8. 2.	'98. 8. 3.~'99.11.7	'99.11.8이후
⑪여신관리계좌 운용	○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 함(제12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⑫여신관리계좌 입금액 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입금일부터 3월이내에 지급신청이 없는 금액을 사업주관기관의 지급불가능 판단을 받아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을 경과한 미지급액 반납('97.예산부터 적용)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 계상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 반납(제12조제4항) ※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또는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각각 11일째되는 날 이후 반납시는 그 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 연체 금리 적용(제12조제5항 및 제7항)	○ 여신관리계좌마감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 반납통지서 접수일부터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⑭지원실적 의 공개	-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2) **지원대상자**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인등** : 농업인·임업인(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 : 농·축·삼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융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업경영자금(협동조합과), 축산경영자금(축산정책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축·삼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축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자기사업에 투입된 자신과 가족의 노동대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자기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 자가노동력으로 상계 처리할 경우 자기자본의 투입 없이 정부지원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모순이 있어 자가노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본규정 개정시행('98. 8. 2)이전에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느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이월할 수 없으며**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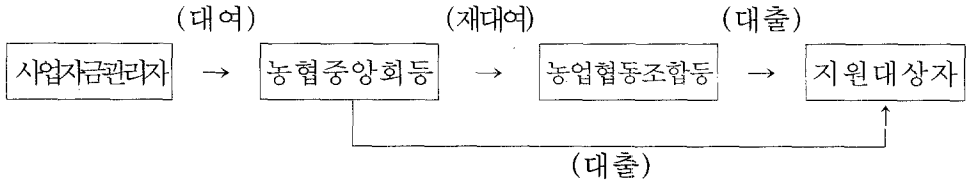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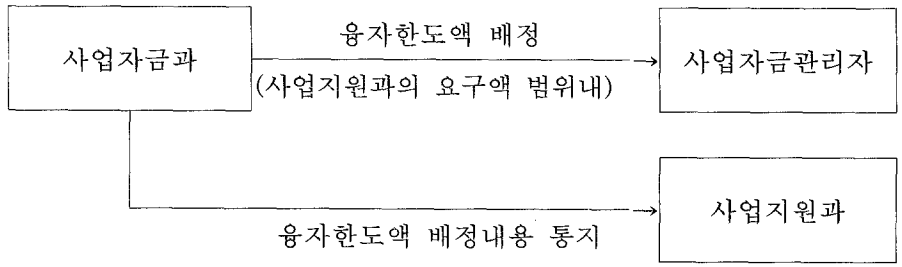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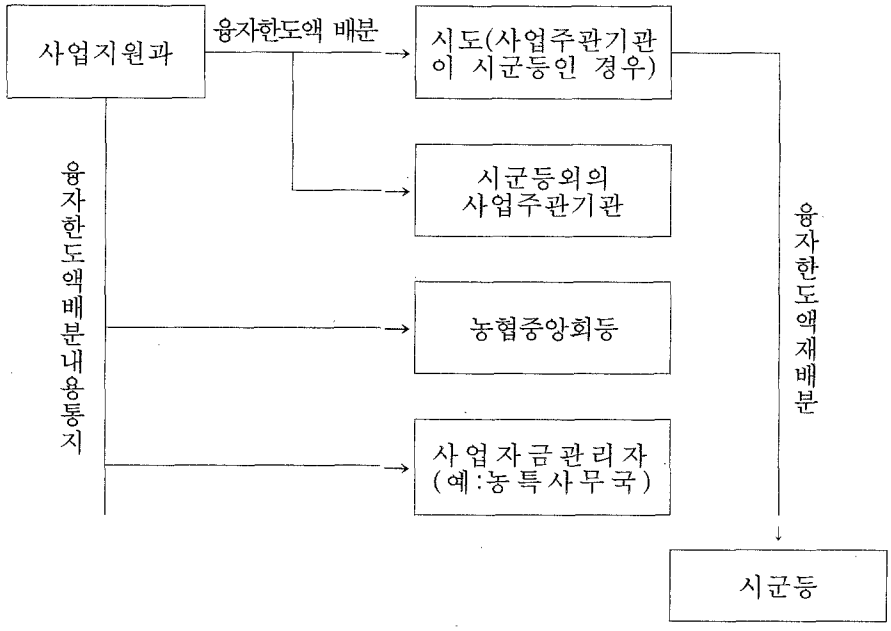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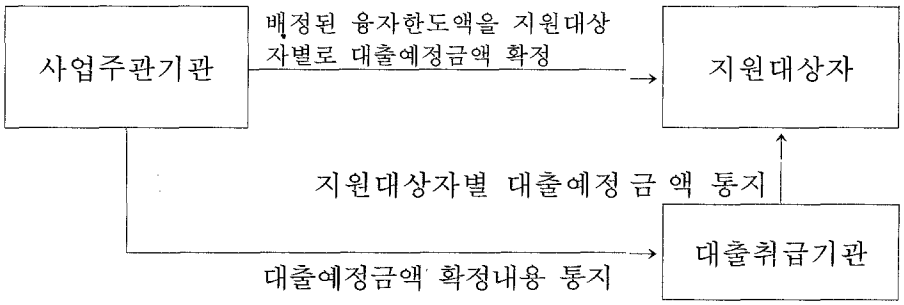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에 요청하여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후 대출(제10조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5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10.(1.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 특히 '98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장등이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부도·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당해금액이 반납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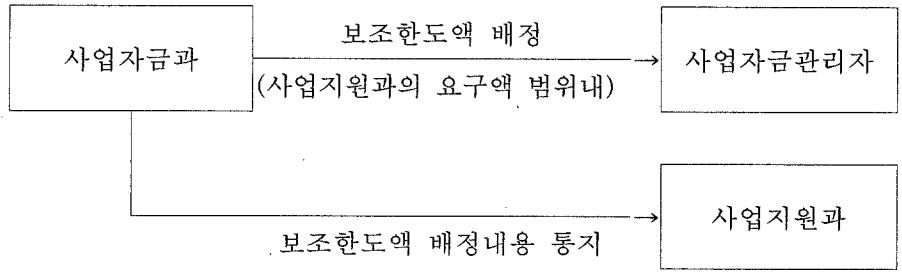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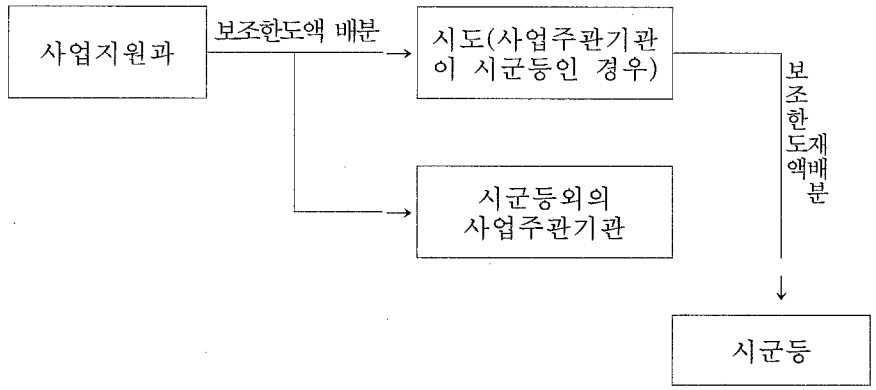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1) 지방자치단체, 농·축·임·삼협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Ⅲ.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부 훈령 제1083호)

여 백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선정과 실시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시행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 등이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28.>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농림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다. 농림업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신설 1997. 10. 29.>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의 계획과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1999. 11. 16)

② 농림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이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한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립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개정 1997. 10. 29.>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조의2 (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지침안에는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 요령과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 청, 시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안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정하기 전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제4조의3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

③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및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농업정보통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1998. 3. 29>
2. 청의 기획관리관

3. < 삭제 1999. 11. 16 >

4. < 삭제 1999. 11. 16 >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사업시행지침중 신청의 자격·절차·구비서류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우선순위·절차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제2호의 위원을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3. 9, 2000. 11. 27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을 위한 경우는 2월, 4월, 7월, 9월의 마지막 주중 각 1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집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4조의5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 10. 28.>

제4조의6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국장 및 청의 기획관리관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의 과의 장과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8. 3. 9, 1999. 11. 16>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투자심사담당관실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서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제4조의4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5조 < 삭제 1996. 10. 28.>

제6조 < 삭제 1996. 10. 28.>

제2장 자율사업 <개정 1996. 10. 28.>

제7조 (자금지원계획 및 자율사업 신청요령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요령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인삼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개정 1999. 11. 16, 2000. 11. 27>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읍면동을 통하여 반(班)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8조 (자율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기관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 12, 1999.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및 상담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자율사업의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사항(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수준, 노동력, 토지 및 생산시설과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
4. 담보(신용보증서에 의한 담보를 포함한다.) 및 자부담 능력
5. 사업의 수익성 및 전망
6. 선도농가의 사례 또는 외국의 예
7. 생산자단체등의 구성방법 및 절차
8.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의 요건 및 절차
9. 자율사업이 잘못될 경우 예상되는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9조 (자율사업의 신청 등) ① 자율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읍·면동장과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가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12. 1999. 1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한다.)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0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자율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전 절차)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개정 1999. 11. 16>
2.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개정 2000. 11. 27>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신설 1997. 10. 29.>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별로 금액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전문개정 1996. 10. 28.]

제12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개정 1999. 11. 16]

제13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28 2000. 11. 27>

제14조 (자율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작성 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자율사업신청서를 심사하되, 지원신청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심사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자율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을 확인하여, 성실하게 기록한 신청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 12.>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신청자에게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이수하지 아니한 자보다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⑤ 시·군 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 11.12.>

⑥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9. 11. 16>

[전문개정 1996. 10. 28.]

제15조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 등) ① 시군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② 시군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③ 시군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개정 1999. 11. 1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자율사업신청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16>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이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구의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1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11.12.>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개정 1999. 11. 16>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1998. 11.12, 1999. 11. 16>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6>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어야 한다.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1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11. 16>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0. 28.]

제1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제2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개정 1997. 10. 2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부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로부터 제9조제4항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스스로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2.>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제9조제4항에 정한 최저 금액미만으로서 1천 5백만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장 공공사업 <개정 1996. 10. 28.>

제25조 (공공사업의 신청) ① 공공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등 또는 시도의 총괄부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이하 "융자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10조에 정한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행기관이 공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사업효과의 확산방안·사업준비상태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총괄부서 또는 융자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동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신청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26조 (공공사업신청서의 심사 및 예산 반영)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의 총괄부서가 시군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총괄부서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중 그의 소관에 속하는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반영(국고의 경우 예산청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개정 1998. 3. 9.> [전문개정 1996. 10. 28.]

제27조 <삭제 1997. 10. 29.>

제28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제2항제7호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공공사업에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중 "영농후계자의 자격요건"은 "경영능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6호중 "선도농가"는 "우수사업자"로 하고, 제11조중 "제9조제1항 및 제3항"은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규정중 "자율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은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1996. 10. 28, 1997. 10. 2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개정 1996. 10. 28.>

제29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농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경제성
4. 농업인등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대효과
7.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등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0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분석자료에 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청의 소관사항은 자체 정책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제31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개최일전 5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그 사업시행지침을 포함한다.)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확정한다. <개정 1997. 10. 29. 2000.11. 27.>

②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개정 1997. 10. 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7.>
[전문개정 1996. 10. 28.]

제3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29.>

제33조 < 삭제 1996. 10. 28. >

제34조 < 삭제 1996. 10. 28. >

제5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35조 < 삭제 1996. 10. 28. >

제36조 < 삭제 1996. 10. 28. >

제37조 < 삭제 1996. 10. 28. >

제38조 < 삭제 1996. 10. 28. >

제39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대행기관에 신청한 공공사업은 당해 융자대행기관에 1차 관리책임이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은 지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0. 28.]

⑥ 농림사업의 계획·집행·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개정 2000.11. 27.>

제40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29.>

제4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8. 1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 림 사 업 분 류 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70)		**(23)**	**(47)**
2.농업(식량작물) 구조개선(17)		**(5)**	**(12)**
	가.생산기반확충(12)	(2)	(10)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나.농업기계화(3)	(2)	(1)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농기계생산지원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다.생산및유통개선(2)	(1)	(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증설·운영	
			협동조합합병지원
3농업(원예·축산) 구조개선(20)		**(6)**	**(14)**
	가. 생산기반확충(1)	(1)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나. 사육기반확충(5)	(2)	(3)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계열화사업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다. 원예.생산및유통 개선(10)	(3)	(7)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및 유통시설지원
			농수산물소비지유통 기반확충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라.축산물 생산및유통 개선(4)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 농산물수출진흥사업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4) 축산물품질향상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4.농촌개발(19)		**(6)**	**(13)**
	가.생산및유통개선(3)	(3)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농촌가공산업육성 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나.기술개발 및 정보화(4)	(1)	(3)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농림기술개발사업
			농촌활력화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다.인력육성(3)	(1)	(2)
		후계농업인육성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라.소득보전(3)		(3)
			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
	마.소득원개발(4)	(1)	(3)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공단지육성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마.생활환경개선(2)		(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임업및산촌구조개선(14)		**(6)**	**(8)**
	가.경영기반확충(4)	(2) 산림경영장비지원 영림계획	(2) 사유림협업경영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나.생산및유통개선(4)	(2) 임산소득증대 임산물 이용가공 및보드류 시설지원	(2) 산림조합육성지원 임산물유통개선지원
	다.인력육성(2)	(1)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육성	(1) 임업전문인력양성및임업 기술지도
	라.산림복지 기능증진(2)		(2) 산림휴양공간조성및산림 박물관등 산촌종합개발
	마.산림자원조성(2)	(1) 해외조림사업	(1) 산림자원조성

[별표2 : 제39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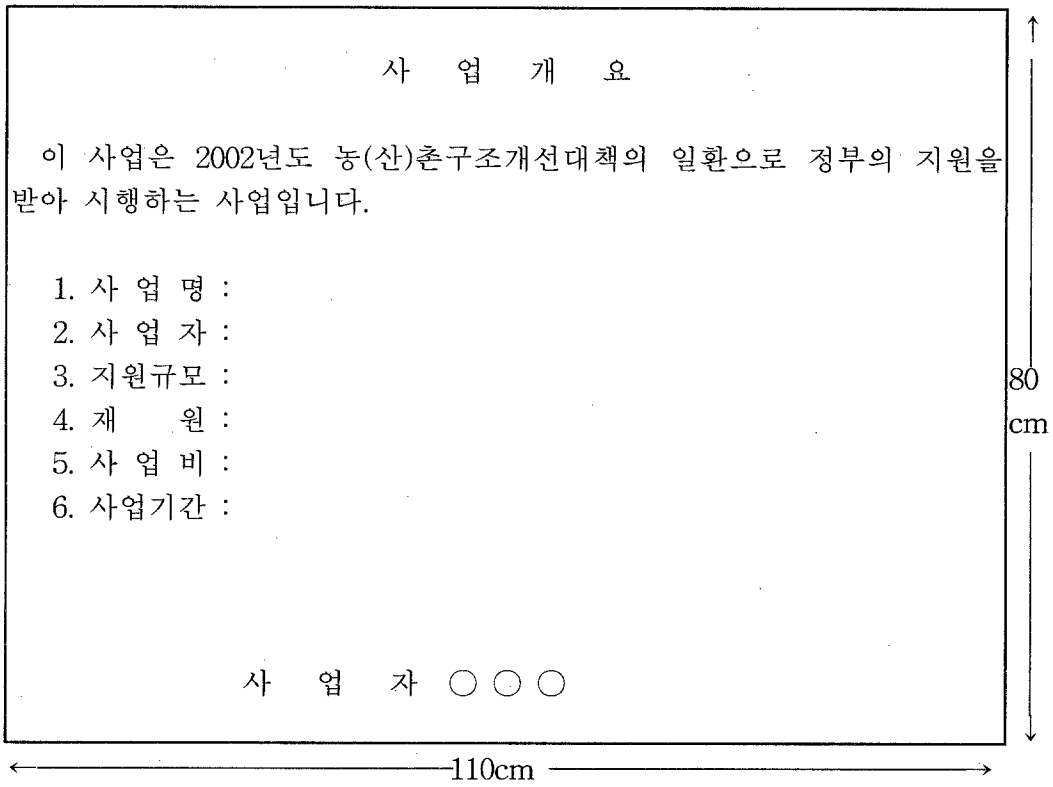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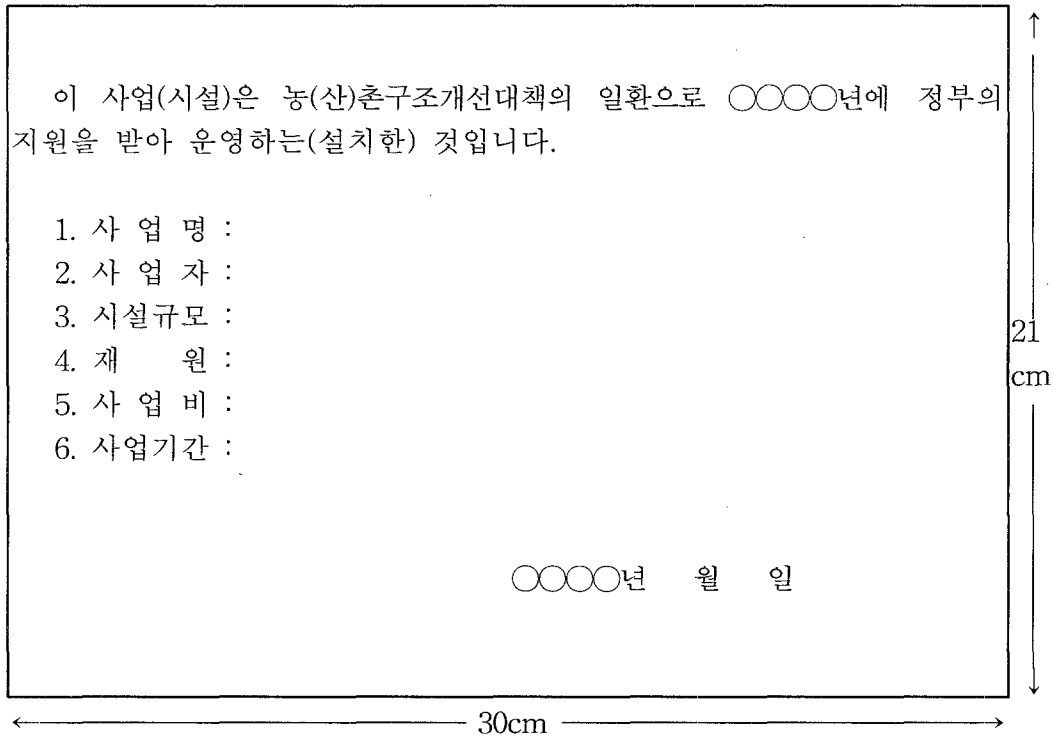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2002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등)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나환자촌안의 영농조합법인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법인설립후)

2. 사업별 요건(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지침서의 개별단위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서 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농업인이 아닌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읍·면 또는 농업기술센타에 위임할 수 없음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 후 정산할 것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과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미, 양, 가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단,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신용평가는 시·군 농협(농업분야), 축협(축산분야)에서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의2제1항 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요령

○ 별도의 지침지시없이도 농업인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에 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분량에 제한없이 상세히 열거

○ 일련번호는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단위사업의 순서를 대분류별, 중분류별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의 순서로 적음 (예)

1	○○○○○○사업 (자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서식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항목을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음

○ 각 항목의 기재는 반개조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당해 항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음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는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을 기재하여야 함

일련번호	단 위 사 업 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 ○○청] **○○과** (과장 ○○○, 사무관 ○○○)**입니다.**

1. 목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 "6-바"에서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시책방향의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재

3. 근거법령(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의 관련조항을 법령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도별 지원계획

0구 분		'92- 년	년	년	년 (예산안)	년	-2004
사업량							
사업비	계	백만원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년도 사업시행요령(○○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반개조식으로 기재

나. ○○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년도는 사업예정년도를 말함)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 년거치후 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신규사업의 경우 이 지침 시행후 새로이 신청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6의 가 내지 바"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그외의 경우는 < >항목자체를 삭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명을 기재)

나. 사업담당부서(과단위까지 기재하고 농림부 및 청의 경우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병행기재)

- ○ 농림부(또는 ○○청) :
- ○ 시도 :
- ○ 시군자치구 :

다. 자금지원예정자(자율사업의 예와 같이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이어서 기재할 수 없거나 확정전에 발표하여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사업비 집행방법, 추진일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
* 대규모 지원시설 또는 첨단시설의 경우 시공자 자격기준, 시설설계, 계약절차, 공사감리, 준공검사 및 대금집행 방법 등의 절차르 구체적으로 기재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 등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에 관한 서식, 사업비에 포함하는 비목의 범위, 검정 및 정산 사무처리절차, 기타 세부 필요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조제3항 내지 제8항 참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 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기재

바. 기타사항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정상운영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체계 기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주)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가능한한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조치 (별지제7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나. 보고·기타

* 보고서식은 사무관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수시보고의 심사를 받은 것에 한하며, 서식 위좌측 여백에 지정 또는 심사를 받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6. ○○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년도는 사업예정 년도의 다음년도를 말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명]

나. 신청자격

* 농업인등의 선호가 높아 신청경쟁이 치열하여 탈락자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격요건 강화조건을 반드시 기재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맞도록 명시

○ 우선순위

* 농림부장관(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이 따로 정하는 전문경영체에 대하여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반면,

* 전문 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 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함

○ 선정절차

* 대형사업 및 첨단시설 설치사업등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표준경영진단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사업성 검토내용 기재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의2제3항 관련]

20○○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각권별 제목]

총5권중 제○권

20○○. ○○. ○○.

농 림 부

< 작성요령 >

○ 구성 : 총5권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편성

- 각권의 첫장에 일러두기를 기재(권별 수록내용, 문의기관 등)
- 각권내용의 차례(目次)를 전체권 공통순서로 하여 특정권만으로도 다른권에 수록된 내용목록을 알 수 있도록 함
- 각권의 쪽번호는 제1권부터 시작하여 제5권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함

[별지 제3호서식 : 제9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6"></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영농(림)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안</td><td>지구</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밖</td><td>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7"></td></tr>
</table>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4">영 농
규 모
(ha)</td><td></td><td>논</td><td>밭</td><td>과수원</td><td>사료포</td><td>목초지</td><td></td><td>계</td></tr>
<tr><td>소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임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재 배
현 황
(ha)</td><td>벼</td><td>사과</td><td>배</td><td>포도</td><td></td><td></td><td></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시 설
현 황</td><td rowspan="4">개별
시설</td><td>관수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일반저장고</td><td>선과기</td><td>기 타</td></tr>
<tr><td>관 정 : ha</td><td>㎡</td><td>㎡</td><td>대</td><td></td></tr>
<tr><td>점적관수 :</td><td></td><td></td><td></td><td></td></tr>
<tr><td>스프링쿨러 :</td><td></td><td></td><td>(톤)</td><td></td></tr>
<tr><td rowspan="2">공동
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선과장</td><td>인공수분기</td><td>수송차량</td><td>교육장</td><td>기 타</td></tr>
<tr><td>㎡</td><td>개소
(톤)</td><td>식</td><td>대
(톤)</td><td>㎡</td><td></td></tr>
<tr><td colspan="7">(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7"></td></tr>
</table>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9조제4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6">사 업 비 (천원)</td></tr>
<tr><td>사업 규모</td><td></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td><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able>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2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동산 보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4 년	3년-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4년	3년-5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년	6년-10년
농업중 과수	16년	12년-20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8호서식 : 제2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입			지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049호)

여 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 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 1049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1. 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 11. 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7. 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자금과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과는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금과는 대여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과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98. 12. 19.개정)>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년도 말(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0일(1월 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 12. 19>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월 11일 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8. 12. 19, 1999. 11. 8>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취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접수확인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19 . . .	확인자	농림부(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시·도) ○○과	·	·
		·	·	·
		·	·	·
		·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합계 : ③1 천원

(주) ○ ①=②+③+④, ③=③1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확인일 19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	.	.
		.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6.시 도 의 재 배 분 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㉛ 합계 : ㉛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확인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ㅇㅇ과	ㅇㅇㅇㅇ	ㅇㅇㅇ
년 월 일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6.시 도 의 재 배 분 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년 월 일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합계 : ㉛ 천원

(주) ㅇ ①=②+③+④, ③=㉛

ㅇ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ㅇ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ㅇ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일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년 월 일		.	.	.
		.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 배분일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대출예정금액 확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접수확인 (19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년 월 일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년 월 일		
6.시 도 의 재배분일	년 월 일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년 월 일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⑤1 합계 : ⑤1 천원

-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년 ○○월 ○○일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19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V.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주요개선사항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영농규모화 사업 **□영농규모화**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지 원 조 건 · 농지매매자금: 연4.5% · 농지임대차자금: 무이자 · 농지교환분합자금 : 연4,5%	○지 원 조 건 · 농지매매자금 : 연 3% · 농지임대차자금:무이자 · 농지교환분합자금:연3% ※경과규정:4.5%로 지원되는 농지에 대한 융자금리는 2002.1.1일 이후는 3.0% 적용	○시중금리가인하됨에 따라 지원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농지	○제주도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안의 감귤과수원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우량 감귤과수원을 대상으로 매입 - 다만, 과수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지역과 연접된 진흥지역밖의 감귤과수원도 매입 가능	○제주도에 한하여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전·과수원 및 농업진흥밖의 우량 감귤과수원을 대상으로 매입 - 다만, 기타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확대 또는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과 연접된 진흥지역밖의 잔과수원도 매입 가능	○제주도 기타전업농에 대한 밭지원에 따른 수정
○지원우선순위	(신규)	○'01이후 우수쌀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있는 쌀 전업농, 1,000㎡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쌀재배 전업농우선 지원	○미질향상위주 쌀 생산 유도
		○2ha이상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3ha이상 경영규모 확대가 가능한 자	○3ha이상농가출현 유도 및 단계적 전업농 육성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자격을 승계받은 후계농업인	○교환분합사업참여 농가에대한우대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 한자	○후계농업인에게 자격승계토록 유도하여 농지세분화 방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농지임대차사업>			
○ 임대대상자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	○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매수청구농지 매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신규)	○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로서 쌀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자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3ha이상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신규)	○ '01이후 우수쌀품평회에서 입상한 경력이있는 쌀 전업농, 1,000㎡이상 품질인증을 받은 쌀재배 전업농우선 지원	○ 미질향상위주 쌀 생산 유도
<행 정 사 항>		○ 농업기반공사는 사업비 집행시 경영규모가 3ha 이상인 농가가 출현되도록 3ha미만 농가에게 집중 지원	
□쌀전업농육성			
○ 신청자격	○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 하고있는 농업인 - 다만,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농전·농대 등 농과계 졸업자와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는 영농경력의 제한없음	○ 젊고 유능한 인력의 신규참입 기회 확대
○ 사업취소사유	○ 쌀 전업농의 경영규모가 5ha미만인 자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가 3ha미만인 자	○ 자력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 도모할 수 있도록 대체선정 기준규모 조정

과 제	현 행 (2001)	변 경(2002)	변경사유
○사업장소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모두 매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 대토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소지 불식
○쌀 전업농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영농경력 : 100점	○영농경력 : 100점 <남자의 경우> - 6년 미만은 50점으로 하되 6년이상은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여자의 경우> - 4년 미만은 50점으로 하되 4년이상은 1년 단위로 10점씩 가산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재학중인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농업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경력으로 인정	○남녀의 구분을 통한 평가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여성 전업농 참입기회 확대
2. 토양개량 Ⅱ. 객토	(신설)	○고품질 쌀 생산농가 공동객토 우선 지원 - 농가 1,000㎡이상, 공동 10,000㎡이상	

과 제	현 행 (2001)	변 경(2002)	변경사유
4. 밭기반정비			
2.시책 및 추진방향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3ha이상) 위주로 정비	○.....밭(밭3ha이상, 과수원 5ha이상)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대상지 기준으로 지침에 집단화 규모 기준을 명확히 함
<사업개요> (2)지원단가	○Ⅱ유형(복합정비) 용수개발+농로개설 또는 밭경지정리+농로개설	○ (조문 추가) .....용수개발+밭경지정리	○복합정비 가능 유형을 명확히 함
<추진체계> 다.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농업기반공사 ※주 관개용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 농업기반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기 설치된 용수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수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며, 수리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토록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사업대상지구선정> 가.일반선정기준	(신설)	○고품질쌀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선정	○미질향상위주 쌀 생산 유도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관련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사업계획수립·시행> 아.용지매수 및 보상	(2)용지매수는.....공공시설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농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수없이 기부채납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며, 용지매수시에도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	○..... .....,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용지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코자 하는 조항이므로 용지매수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차.준공검사	(1)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수혜민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수혜민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규약을 정하여 시·군 등에 등록토록 하여야 함	(1)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 (삭제)	○ 수혜민이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 또는 규제성격의 규정 삭제 ○ 수리계(유지관리조직)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지침의 "행정사항"의 "사후관리"에서 일괄 규정
	(2)시도지사는 ..... 인수토록함. ○ 준공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여부,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실시함.	(2) ○ .....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을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한 후 수리계를 조직(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3조)할 수 있음
<행정관리> 가.사후관리	(신설)	○ 밭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지 제4호의 7 서식을 이용하여 "밭기반시설"로 등록	○ 밭기반정비시설 등록시 농어촌정비법령에 규정된 등록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시행지침에 명시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신설)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며,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부 시설 51350-10543('00.11.8)의 붙임3과 밭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 부록의 "밭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 구성과 관련된 법령을 명시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 밭기반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하므로써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 및 원활한 유지관리 도모
[별표1] 차등보조율적용 대상 지자체	○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7개시 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과천,용인 ○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 33개 시군 · 충북(2) : 괴산,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장수 · 전남(13): 곡성,구례,장흥,강진,신안,보성,함평,완도,고흥,진도,해남,무안,장성 · 경북(6) : 의성,영양,봉화,청송,예천,군위 · 경남(4) : 산청,함양,의령,합천	○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02마무리>:현행(2001)과 같음 <02착수>: 8개시(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과천,용인) ○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02마무리>:현행(2001)과 같음 <'02착수> :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6) : 진안,임실,순창,고창,부안,장수 · 전남(13): 곡성,구례,장흥,강진,신안,보성,함평,완도,고흥,진도,해남,무안,담양 · 경북(7) : 의성,영양,봉화,청송,예천,군위,상주 · 경남(5) : 산청,함양,의령,합천,남해	○ '01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기초자치단체 선정 결과에 따름 ○ '99-2001기간중의 지방재정력지수와 농지면적, 농업인구 등을 감안한 농업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수산정 결과에 따름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5. 경지정리사업			
○지원기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보조율 : 국고 80, 지방교부금 20%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보조율 : 국고 80, 지방비 20%	○2002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름
○대상지선정기준	(신 설)	○고품질쌀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미질향상위주 쌀 생산 유도
○ 환지업무	○확정측량 ; 경지정리 지구내 분할표지를 공사 감독자가 설치	○확정측량: 경지정리 지구내 분할표지를 대한 지적공사가 공사감독 입회하에 설치	○일시용지 지정면적 및 확정측량면적의 오차범위를 최소화 시킴으로서 사전 민원해결
	○환지계획인가 (신설)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관할지역이 일부 타도 구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지구는 사전에 일부 편입 시·도와 사업계획, 사업비 부담문제 등을 협의후 추진	○사업지구가 도간에 걸쳐 있을 경우 사업시행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협의 후 추진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6.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별표1] 차등보조율적용 대상 지자체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7개시 · 수원,성남,안양,안산, 고양,과천,용인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 33개 시군 · 충북(2) : 괴산,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7) : 진안,무주, 임실,순창,고창,부안, 장수 · 전남(13): 곡성,구례, 장흥,강진,신안,보성, 함평,완도,고흥,진도, 해남,무안,장성 · 경북(6) : 의성,영양, 봉화,청송,예천,군위 · 경남(4) : 산청,함양, 의령,합천	○국고보조율 인하 해당 지자체 - 8개시 · 수원,성남,안양,부천,안산, 고양,과천,용인 ○국고보조율 인상 해당 지자체 - 33개 시군 · 충북(1) : 보은 · 충남(1) : 청양 · 전북(6) :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장수 · 전남(13) : 곡성,구례, 장흥,강진,신안,보성,함평, 완도,고흥,진도,해남,무안, 담양 · 경북(7) : 의성,영양, 봉화,청송,예천,군위,상주 · 경남(5) : 산청,함양, 의령,합천,남해	○'01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기초자치단체 선정 결과에 따름 ○'99-2001기간중의 지방재정력지수와 농지면적, 농업인구 등을 감안한 농업 지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초자치단체별 차등지수산정 결과에 따름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7.배수개선			
○ 대상지선정기준	(신 설)	○ 고품질쌀생산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역은 대상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 미질향상위주 쌀 생산 유도
다.예정지조사	(4)수혜면적이 50ha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할 때는 기술용역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정지 조사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때 소요되는 기술용역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함	(4)..... .....경우에는 자체비용으로 시도지사가..... .... 수 있음.	○ 50ha미만인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비용은 자체부담함이 타당
8.수리시설개보수			
Ⅰ.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1)사업대상지구선정 ○ 선정기준	-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내를 급수하는 수리시설중 재해위험시설 또는 개보수 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당기간 영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급수를 담당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도 대상이 됨	- .....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중 ..... (단서조항 삭제)	○ 개보수사업은 기존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므로 진흥지역 여부는 지구선정기준이라기 보다는 사업우선 순위에 해당됨. (우선순위로 이기)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우선순위	(신설) - 재해에 취약한 요소가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에 급수하는 수리시설 - 안전점검 결과 재해에	○ 선정기준의 농업진흥지역내 수리시설을 우선순위로 이기 ○ 안전점검 결과를 개보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
(3)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가)예정지조사 <양수장>	(신설)	- 하천의 하상변동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 하천의 하상변동에 따른 취수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추가
(나)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요령	- 수원공은 단위시설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가 10억원미만 소규모 지구는 10억원수준으로 타수원공시설, 용수로개보수를 포함하여 일괄계획 수립 - 용수로는 수원공별로 전체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지구별 사업비를 2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은 들녁별, 수원공별 전체계획(Master Plan)을 구상하고, 지구별 총사업비는 30억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계획수립	○ 사업의 수요증가와 항구적인 개보수를 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상향조정 (10~20억원→30억원)
(5)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계획 고시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수 및 수용하여야 할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등의 필지별 조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시설의 확장 등으로 토지 등이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에만 고시 및 동의서를 징구토록 함.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0)사업비관리 (다)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 결산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보고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요령에 의하도록 보고기간 삭제
Ⅱ.저수지준설 <사업추진> (10)용지매수 및 보상	(신설)	○ 사토장은 저습지 매립, 농경지 객·복토 등에 의한 무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에 의한 사토장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용지매수하여 처리	○ 사토장확보 곤란에 의한 사업추진지연 예방
	○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집행.	○ 용지매수보상비는	○ 사토장확보 곤란에 의한 사업추진지연 예방
	○ 보상 업무는 농한기에 시행하여 작물보상이나 실농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삭 제)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9.농촌용수개발사업 Ⅰ.대중규모용수개발 <사업대상지구선정>			
가.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조건하에 선정(도시개발계획 등에 포함되어 타용도로 전용될 지역은 제외함.)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대중규모용수개발과 배수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농지로 보전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과 제주도 지역은 진흥지역 위주개발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역별 불이익 해소
	(3)신규개발면적 비율이 50%이상이거나 주수원공의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구	(삭제)	○ 사업제한요건 완화로 사업추진 원활 도모
<사업계획수립·시행>			
바.공정계획	(8)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8월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지구 지정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 ……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전년도 3월이전에 …… ……	○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이 총액계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Ⅱ.지표수보강개발 (1)사업대상지구선정 (가)선정기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지하수이용시설 제외) 중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시설	○내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지하수이용시설은 제외)을 대상으로 함.	○조문정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후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으로 편입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삭 제 >	○보강개발이 필요한 시군구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 완화
<행정사항> 가.사후관리	(나)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진흥지역으로 편입	(나)비진흥지역이 포함된 지구의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사업시행후 진흥지역으로 편입	○동지침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앞으로 계속 영농이 예상되는 수리시설도 개발가능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진흥지역 편입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편입토록함

구 분	현행(2001)	변경(2002)	변 경 사 유
11.대단위농업 개발사업			
(12)유지관리	(가)사업시행자는 기 완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가)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준공(부분준공 포함) 되어 농업기반시설이 완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동 시설을 관리할 자(농업기반시설 관리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며, 인계할 때까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사항 개정 (유지관리장관승인삭제)
	(나)유지관리 사업비는 실비 정산함		
	(다)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외에 타 사업비로 충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예산 미확보지구와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잡수익으로 충당화되 잡수익이 부족할 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나)전항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기반시설등록
		(다)사업시행자는 완공된 농업기반시설을 인계하기 전이라도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을 인수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수대상 시설 [redacted] 한다.	○유지관리비예산확보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2.지역특화사업 ○추천사업구분	(신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과 특성화품목개발 및 병충해방제사업 등으로 구분	○'02예산(안) 내역서와 부합되도록 운영
○추천사업 축소·조정	○추천사업 : 19개사업	○추천사업 : 16개사업 -오염농경지 객토, 마늘경쟁력 제고, 축산분뇨액비저장고설치 * 통합: 벼·채소류방제지원 * 추가: 농기계임대사업	○중복지원되는 사업 삭제 및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재분류
○예산배정기준	○일반특화사업 - 일괄배정, 공모사업으로 구분 배정 <신설>	(삭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 농림업무 및 고품질쌀 대책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정(인센티브 사업)	○예산내역서에 의거 사업을 운영하되, '02실적가산금 예산의 삭감에 따라 예산 배분방식을 일괄배정, 공모방식선정, 인센티브사업으로 구분
		○특성화품목개발 및 병충해 방제사업 등 - 일괄배정, 공모방식 선정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구분 배정 * 인센티브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은 50%이상을 추천 이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실적가산금사업 - 농림업무 및 쌀 생산대책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 배정	(삭제)	

구 분	현행(2001)	변경(2002)	변 경 사 유
○ 지원기준	○ 추천이외 사업 - 시·도지사는 유사한 기존사업의 지원기준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지원기준 결정 (신설)	○ 추천이외 사업 - 유사한 기존사업과 지역특성·사업실적·사업수요자 등을 감안, 지원조건에 자부담을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토록 명시 *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비는 국고지원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지원조건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및 해외투자사업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삭제)	○ 그간 별도 운용실적이 없고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제
○ 사업시행	○ 일괄배정 - 추천이외사업 (신설)	○ 일괄배정 및 인센티브사업 - 추천이외 사업 * 사업계획에 사업비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사업은 사업추진 불가	○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잦은 사업계획 변경 방지 및 부실시공 예방
	○ 공모사업 - 사업신청 · 신청한도 : 공모사업 총액의 1/3 범위내 (신설)	○ 공모방식 선정사업 - 사업신청 · 신청한도 : 시·도별 7건 이내, 국고기준 30억원 이내 * 사업비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신청은 시도에서부터 제한 - 시·도 선정공모사업이 5건이내임.
○ 사업계획변경보고	○ 시·도지사는 추천사업의 세부사업 상호간 예산변경 집행	○ 시·도지사는 분야별 사업내의 세부사업 상호간 예산변경 집행시 9, 12말 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 그 결과보고	○ 행정 효율성 제고

구 분	현행(2001)	변경(2002)	변 경 사 유
○사업관리	○시·도사업과는 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	○시·도 사업과는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완화(연 4회 → 연2회)
○보고·기타	(신설)	○9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 상황 점검결과 보고	○예산불용액 등을 타 시도로 조기 전배 조치 - 별도 공문시행 추진하던 것을 명시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소규모 지표수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이상	○소규모 지표수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이상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확보
	○논농사용지하수, 원예용 암반관정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이상	○지하수개발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이상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확보
	- 논농사용 지하수 ·대상지역 : 논 (신설)	- 농사용 지하수 ·대상지역 : 논, 밭 ·사후관리 : 관리대장 비치, 5년간사후관리	○명칭변경 및 밭농사용 지하수개발 추가
	- 원예용 암반관정 (신설)	- 원예용 지하수 ·농사용 지하수 개발에 준해 사후관리	○사후관리 조항 신설
	○벼병충해방제, 채소류 병충해방제	○벼·채소류방제	○사업명칭 통합 관리
	- 벼병충해방제 ·대상병충해:벼물바구니, 도열병, 벼멸구 및 농림부장관이 별노로 지정한 병해충	- 벼병충해방제 ·대상병충해 : 시·군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한 병충해 추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 지자체에서 신속 대응
	- 채소류 병충해방제 (신설)	- 채소류 병충해방제 ·지원대상품목 : 배추, 마늘, 무, 고추, 수박	○고추, 수박 등의 병충해 방제 품목 추가
	·지원단가 (신설)	·지원단가 지자체장이 자체검토한 지원 단가	○농림부에서 지원단가를 정하지 않는 품목은 지자체장이 단가를 결정토록 함.

구 분	현행(2001)	변경(2002)	변 경 사 유
	○ 오염농경지객토	(삭제)	○ 토양개량사업과 중복
	○ 백합종구자급화사업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이상) · 중간자구 구입자금 : 20%이상 자부담	○ 백합종구자급화사업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지방비 50% 이상) (삭제)	○ 지자체장이 지원조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삭제)	○ '02년도 신규예산 확보 (단일사업으로 추진)
	(신설)	○ 농기계 임대사업	○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천사업 추가
	○ 우수농산물판매촉진 지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 : 1억원이내	○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 : 2억원이내	○ 상품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규모 확대
	○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우리밀생산지원 - 목재파쇄기구입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 (지방비 50%이상) *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에 지원시 자부담 포함	○ 친환경 특화작목 생산지원 - 목재파쇄기구입 · 지원조건 : 국고 50% 정액보조 (지방비 50%이상) (삭제)	○ 예산내역서에 명시된 사업명칭으로 통합관리 ○ 지자체장이 지원조건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푸른들가꾸기운동지원 · 지원대상자 : 농가 · 지원내용 : 종자대 지원 · 지원한도액 <신설>	- 푸른들가꾸기사업지원 · 지원대상자 : 농가,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종자대, 파종기, 파종호스 * 단, 파종기, 파종호스는 생산자 단체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액 : 파종기 (700천원/대), 파종호스 (50천원/50m/1롤)	○ 사업참여 범위 확대 - 생산자단체에서 주관할 경우 공동작업에 필요한 파종자재 지원
	○ 축산분뇨액비저장 탱크설치	(삭제)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중복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3. 농기계구입지원			
1. 사업시행			
○지원대상농기계			
- 형식검사	- 안전장치부착의무 기종, 승용기종	- 안전장치 부착기종, 승용 정밀대형기종	- 형식검사기종축소
- 자유진입	- 농용트랙터용결속기 등 113개 기종	- 농용트랙터용로타베이터 등 143개 기종	- 단순기종의 자유화 확대
	- 인증·형식검사·검정 이외 기종(단, 1천만원 이상 형식은 검정)	- 인증·형식검사·검정이외 기종(단, 15마력이상 엔진 기종, 1천만원이상 기종은 검정)	- 대형기종의 주요성능 확인
- 융자제외대상	- 100만원미만 농기계 (신기술농기계는 예외)	- 100만원미만 농기계	- 신기술농기계 예외 불인정
2. 농기계공급제도			
○융자지원율			
- 쌀전업농	- 융자 70%	- 융자 90% (확인서류 제시의무)	-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 고품질벼 생산농가	- 융자 70%	- 융자 90% (확인서류 제시의무)	- 고품질쌀 생산유도
- 벼직파재배용 농기계	- 융자 70%	- 융자80%	- 쌀생산비 절감유도
-인센티브 부여	(신규)	- 저가경제형 농기계, 여성용 농기계, 생산원가 10% 이상 절감 농기계는 융자 비율 10%P 상향 지원	- 성능이 우수하고 저렴한 농기계공급 촉진
○농협현지확인의무	○전기종(모델)	○공급가격 200만원 이상	○작업기 등 소형 농기계의 현지확인 절차 생략
○중고농기계구입 자금융자지원			
- 융자지원액	- 내용연수 및 사용 연수기준에 따라 산정	- 가격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변경, 거래 활성화
- 융자기간	- 잔여내용연수(내용 연수-사용연수)이내	- 내용연수 경과 : 3년이내 - 내용연수이내 · 잔여3년이상 : 잔여연수 · 잔여3년미만 : 3년이내	- 실제 사용 연수기준 융자 지원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계절성농기계 공급	○사용시기에 맞게 지원	(삭제)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시기 제한 해제
○농기계판매	○업체 통보가격 범위내 경쟁판매	○자유롭게 경쟁판매 가능	○농기계 판매의 완전 자유화
○농기계모델관리	(신규)	○신규 진입모델에 대한 형식명 관리제도 도입 ○생산중단후 3년 경과 모델, 3년이상 공급 모델중 최근 2년간 연평균판매 대수가 20대 미만인 모델은 지원대상제외	○유사동일 모데의 형식명 변경 불인정 ○농기계공급 모델의 합리적인 관리
○농기계진입	(신규)	○진입검토는 연2회 농업기계화시책협의회에서 협의	○농기계진입 절차 및 심의 정례화
	(신규)	○작물생육, 환경조절기기 등은 시험연구기관의 효과검증 후 진입 허용	○효과가 검증된 농기계에 한해 공급
	(신규)	○새로 개발된 기종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평가 후 공급	○최초진입기종의 시험평가 의무화
	(신규)	○신규진입 농기계 원가계산서 제출 의무부여 (제출기관 : 조합)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4.농기계사후관리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조건	○국고10,지방비10, 국고융자 60%	○국고융자 70%	○농가의 책임경영 의식 제고
○사후관리	○년2회이상 점검	○년1회 이상점검	○사후점검 횟수축소

구 분	현행(2001년)	변경(2002년)	변경사유
(농기계수리봉사)			
○부품확보 자금 지원	(신설)	○부품확보용 중고농기계 구입시 20백만원까지 추가 지원	○중고농기계의 부품 재활용
○수리장비지원	(신설)	○읍·면·동 사후봉사업소에 건축비 지원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집행			
- 자금지원신청	- 배정금액 70%이상 구입시	- 배정금액의 30%이상 구입시	○사후봉사업소 자금 부담경감 유도
- 증빙서류	- 일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농기계생산업체와 사후봉사업소 발행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트랙터,이앙기, 콤바인)	○불량 사제품 유통 방지
- 유사부품 실태 조사	- 연1회	- 연2회(트랙터·이앙기 : 상반기, 콤바인:하반기)	○ 〃
- 구입확인증 빙서류 제출	- 농기계조합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며, 대출취급기관은 부품 확보 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	-농기계조합에 제출하며 조합은 지원받은 사후봉사업소에 대해 부품 확인서와 현품 등을 확인	○증빙서류 이중제출 부담경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중고농기계상설 판매장설치지원)	(신설)	○상설판매장 설치 지원 - 개소수 : 8개소(지역농협) - 설치규모 : 150평이상 - 사업비 : 1억원 - 국고보조 50%, 자담50%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촉진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 회수 - 농협중앙회장은 운영실태를 연1회이상 점검(10년간 사후관리)	○부실운영방지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5.농기계생산지원			
○사업시행	○농기계조합은 대상자 심의상정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원대상자 신용조사 의뢰 ○농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농기계조합에 대출 가능여부 통보	○농기계조합은 지원대상 등 확정 후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원대상자 신용조사 의뢰 ○농협중앙회장은 대상자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농기계조합 통보 ○농기계조합은 지원대상자의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자에게 재배정	○대상자 선정전 신용조사에서 선정 후 신용조사로 변경 ○업체의 지원 한도액 미결정시 신용조사 곤란 ○선정된 대상자가 신용조사 불량시 차순위에 재배정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농기계생산지원 배정기준	○주요배정기준 비율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28%, 전년도 지원액 환산비율25%, 수출실적 8.4%, 기업건전성(신설), 기술개발지원(신설), 밭작물용 농기계 판매실적(신설)	○주요배정기준 비율 -최근2년간 평균 매출액 : 종합형업체 10%,중소업체 15% -전년도 지원액 환산비율 : 종합형업체 0%,중소형업체 15% -수출실적:종합형업체 15%, 중소형업체 20% -기업건전성: 종합형업체15%, 중소형업체 0% -기술개발지원 : 종합형업체 10%, 중소형업체 0% -밭작물용농기계 판매실적 : 종합형업체10%, 중소형업체15%	○농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종합형 농기계업체의 기업건전성, 수출실적,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농기계 생산지원 배정기준 조정
	(신설)	○사후봉사강화대책에 의한 감액조치 누적배점에서 경고 회수당 2점 감점	○사후봉사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사후봉사 불이행실적에 대한 감액조치 근거마련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6.미곡종합처리장			
○ 사업대상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	○개정 등
○지원시설	○신규 RPC ※ 신규RPC설치는 RPC가 없는 시·군 또는 지역적 으로 원료수집 경합이 없는 중심으로 우선지원	○2002년도 신규 RPC설치 중단 ※ 신규RPC설치는 RPC가 없는 시·군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신규 RPC설치 지원 중단	○건조·저장시설 확충
○ 장비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제현율자동판정기 또는 도정수율자동판정기는 권장 설치	○등급판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 - 고가의 장비이므로 일반 사업자는 선택사양
○ 준공검사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일선행정기관의 인력 여건반영
○운영자금 지원기준	(신설)	○고품질벼를 계약하는 우수 RPC에 인센티브 부여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19.사료사업지원			
Ⅰ.조사료생산 기반시설	- 초지조성·보완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5년동안 초지전용을 제한	- 조사료생산기계·장비를 지원받은자도 5년동안 양도를 제한하도록 추가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로 활용도 제고
Ⅱ.사료제조시설			
○ 융자조건	- 융자100%	- 융자70%, 자담30%	○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융자비율 조정
20.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95.12월말이전에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노후 기계설비 보완자금 지원	- '96.12월말 이전에 지원받은 농가로 확대 - 노후시설·기계설비에 대한 보완자금 지원(단, 창고형 건물 제외)	○ 지원후 5년경과된 시설에 대한 보완자금 지원 ○ 현행 규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코자 명확히 수정
○ 사업내용			
-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	(추가)	-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젖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 증발건조시설	○ 기술발달등에 따른 항목추가 ○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수로지원 등
· 부대기계장비	(추가)	- 축분발효기계장비,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 〃
	(삭제)	- 스키드로더(단독시설)	○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지원가능 하므로 삭제
- 공동시설			
· 퇴비·액비화	(추가)	-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 기술발달등에 따른 항목추가
· 부대기계장비	(추가)	- 고액분리기, 축사내유해가스 제거기, 축분발효기계장비, 폐사축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기술발달등에 따른 항목추가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지원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사업비적용기준	-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산면적에 따라 지원	- 관리사·창고면적은 축사면적에서 제외	○ 실제 축사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토록 함
○신규사업 추가	- 단독·공동시설, 나정착촌, 톱밥제조시설	- 액비저장조설치사업을 추가	○ 액비의 수요자인 경종농가에 저장조를 지원하여 수요확대 유도
○사업추진			
-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 선정시 관련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농협·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축분뇨자원화협회·관련 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우량업체와 계약	- 유자격업체중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는 우량업체와 계약	○사업참여 업체의 A/S체계확립 및 불량시공·판매업체의 사업참여 배제
- 계약체결	(신 설)	- 시공·판매업체에서 농가에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함	○ 〃
	- 자재 및 기계·장비는 공인된 규격기준품을 사용	- 사용대상 자재 및 기계·장비의 범위를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축산기술연구소·농협·관련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사용	○ 〃
○자금집행	(신 설)	- 자금집행시 시공·납품업체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공사대금지불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고 지역축협에서 동 사업비를 사료비변제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방지	○사업대상자가 분뇨처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21.가축계열화 Ⅰ.가축계열화 ○대상축종 ○지원조건 ○기타 Ⅱ.경주마생산 ○지원내용	 - 돼지 - 연리8%(생산자5%) - 양돈·종돈·돈사 등 - 종빈마,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종련시설 등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연리5.5%(생산자 5%) - 축산, 종축, 축사 등 - 종빈마,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종련시설 등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제주마 DNA분석사업 지원(제주도 축산 진흥원에 장비 및 실험실 신축지원)	 ○대상 축종 확대 ○제주마(조랑말)의 혈통보전과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는 순수 제주마로 전환
22.한우사업지원 Ⅰ.송아지생산안정 ○사업참여신청기간 Ⅱ.송아지생산기지조성 ○사업대상자 ○사업비 ○지원조건	 - '00.11.1~'01.3.31 (신규)	 - '02.1.1~'02.5.31 - 축협조합, 영농법인, 20ha 이상 초지확보한 전업한 우농가 - 4,125백만원(축발기금) - 기반시설:보조30%, 융자40, 지방비30 - 축사등건물 : 보조10%, 융자60, 지방비 30 - 사료재배 및 초지조성, 보안, 관리 : 50%, 융자30, 지방비20 - 기계장비 : 융자80%, 지방비20	 ○농번기 및 가축방역으로 인한 미참여농가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Ⅲ.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 · 단, 7월부터는 인공수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우의 개량과 품질고급화 촉진 - '01년도에 사전예고한 사항으로 농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7월부터 시행
○장려금지급액 신청	- 시·군이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	- 축협조합이 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에 신청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다산장려금은 안정사업 가입우를 대상으로 실시
Ⅳ. 거세지원사업 ○지원대상(한우)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한 자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한 자 · 단 7월부터는 안정사업 가입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거세하는 경우에만 해당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확대 도모를 통한 사육기반 유지와 품질고급화 촉진
23.가축개량 Ⅰ.한우개량 ○사업내용	- 한우개량농가육성 -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한우개량농가육성 -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인공수정료지원 (신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2001.4.16)의 일환으로 송아지 안정제 가입암소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24.농산물 표준 규격화			
Ⅰ.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대상 물류기기	○파렛트(개소당 100매 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1,000매이내), 지게차, 전동차, 마늘 줄기절단기 등	○파렛트(개소당 50매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500매 이내)---- ,마늘선별기 등	○물류기기공동이용 촉진을 위하여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원규모 축소 ○마늘포장출하유도 및 디지털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물류기기 추가
○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100백만원	○200백만원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조건	○보조50%, 융자30%, 자부담20%	○보조40%, 융자30%, 자부담30%	
○대상자 우선순위	○품질등급측정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 순위	○산지유통전문조직, 공영도매시장, ----------, 순위	○산지에서의 규모화된 유통활성화 촉진
Ⅱ.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분류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지원기준	○저장용(내구용)사용기간 -30일이상 90일 이하	○저장용(내구용)사용기간 -30일이상 120일 이하	○실제 저장력 인정 - 과실저장력180일 - 월동배추/월동무 실제저장추세110일
○지원조건	○국고보조70%, 자부담30	○국고보조60%, 자부담40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의식 고취
○제도개선	-	○2002년 상반기중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 현재의 사업내용·지원절차·지원단가·지원대상사업장 등의 적정여부 및 향후개선방안 - 신규참여 희망 풀회사의 선정기준 등	○향후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Ⅲ.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주관기관	○시·도(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규격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지원대상품목	○포장화 미흡품목 - 파,양파,수박 등 9개 품목(지역특성상 9개 품목 추가선정 가능)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 무,배추,마늘 ○표준규격품디지털유통 - 공동계산조직,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표준바코드표시조직, 공동계산조직 농산물 등 - 품질인증/친환경인증품쌀의 경우 재배면적이 3,300㎡이상일 경우 우선지원 ○포장화우대품목 - 무, 배추, 마늘, 양배추 (양배추는 포장재비만 지급) ○기타 생산자조직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농관원, 농협 합의하여 9개 품목 추가선정 가능	○산지에서의 유통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선도조직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포장재비의 30% ○도매시장포장화우대 품목의 경우 포장비용 일부	○포장재비의 30% ○포장화우대품목의 경우 포장비용 일부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경우 선별비 일부	○선별비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도모
○지원우선순위	○포장화 미흡품목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선순위 부여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지원 - 산지유통전문조직 우선순위 부여	○산지에서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촉진
○집행기관	○포장화미흡품목,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시장·군수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 도매시장관리공사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지원, 포장화우대품목, 기타 생산자조직 지원 : 농관원	○지원절차 간소화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25.농산물산지 유통활성화			
Ⅰ.산지유통전문 조직지원	○산지협동조합유통활성화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영농조합까지 지원범위 확대
○사업명 변경			
○지원방향	○일선농협을 농산물산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시·군당 2~3개소, 전국 300개 내외 산지유통전문 조직 지정·운영 - 품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도농협형, 연합판매형, 마켓팅법인형으로 육성	○소비지유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산지유통센터 보유 조합 등을 우선 지정·육성
○신청자격	○최근 1년간 유통사업 실적이 50억원이상인 조합 - 연합사업조합 등 유통전문조합은 20억원이상	○연간 매출액 50억원이상 조합 ○품질관리 전담인력 반드시 고용 ○향후 3년이내 100억원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올리려는 계획을 갖춘조합 -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50% 이상을 확보 - 유통전문인력, 물량조달, 품질관리를 위한 여건을 3년이내 조성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조합에 신청자격 부여
○추진절차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앙단위 지원위원회 심사로 대상자 확정	○각 지역본부에 유통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대상자 추천 ○농림부에 설치된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위원회에서 확정	○지역의 행정기관, 학계, 유통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 도모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지원한도액기준	○60억원(광역 또는 연합 조합 등 최대90 억원)	○70억원(광역 또는 연합 조합 등은 한도 제한 없음)	○유통사업이 활성화되고 규모화될 수 있는 조합 집중 지원으로 사업 목적 달성
○지정서 발급	○ -	○지원대상조합에 산지유통 전문조직 지정서 발급	○사업의욕 고취
○인센티브지원	○상위 10%이내 조합 ○지원조건 : 연리3%, 1년	○상위 20%이내 조합 - 상위 10%이내는 지원액의 20% - 상위11~20%이내는 지원액의 10%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사업자의 사업의욕 고취 및 인센티브 기준 명확화
○자금운용관리		○취급수수료(0.5%)중 20%는 융자취급관리비로 인정 - 사무관리비 등 중앙회 자금으로 활용 ○취급수수료 및 사업위약금은 "유통활성화 추진 충당금 계정"에 별도 적립관리	○현행은 취급수수료 전액을 유통활성화 관련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별도계정 관리로 자금사용의 효율성 증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Ⅱ.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시책 및 추진 방향	-	○연차적으로 산지유통전문 조직지원사업으로 흡수, 사업규모 축소	○종합자금화하여 유통 환경에 능동적 대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가점	○사업신청품목의 공동 출하실적 (40점) ○품목전문화비율(20점)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전국협의회 가입비율 (20점) ○지역협의회 결성(10점) ○공동계산, 파렛트출하 등 우수사례(10점)	○공동출하실적(30점) ○품목전문화 비율(25점) ○전국협의회 품목 가입 비율(20점) ○공동계산제 작목반육성 (15점) ○산지유통시설 보유(10점) ○가점부여 : 조합이 자조금 조성 생산자조직 가입시 (10점)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유통제도에 대한 호응도를 선정기준에 반영
○사업계획 및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평가표 작성	○사전계획에 의한 유통사업 추진 유도
○사업평가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서 작성 - 우수조합은 산지유통전문 조직지원자금을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업실적 평가기능 강화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Ⅲ.공동규격출하 촉진			
○시책 및 추진 방향		○연차적으로 산지유통전문 조직지원사업으로 흡수, 사업규모 축소	○종합자금화하여 유통환경에 능동적 대처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으로 지원목적 달성
○선정기준	○최우수조직, 우수조직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그기준이 불명확	○농협의『작목반육성 및 지원준칙』에 의해 평가한 결과로 대상자 선정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조합에 우선 지원 - 선진조직 : 85점이상 - 일반조직 : 70-84점 - 기초조직 : 69점이하	○작목반 평가내용을 지침에 명시하여 조직발전 및 유통활성화 - 조직내실화(25점), 농협지도지원(10점), 공동사업활동(35점), 규격출하 및 품질관리활동(30점)
○자금지원기준	○지원순위를 5단계로 하여 지원 ①공동계산제 조직 ②공동브랜드 조직 ③최우수조직 : 사업계획의 80%이상 ④우수조직 : 50%이상 ⑤일반조직 :	○지원순위 4단계로 단순화 ①산지유통전문조직을 통하여 출하하는 조직 ②공동계산조직 우선지원 ③선진조직 : 사업비 잔액의 70%이상 ④일반조직 및 기초조직 : 상위조직지원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원	○작목반 종합평가 결과가 지원순위에 반영되도록 개선
○지역조합의 사업평가	-	○지역조합단위로 사업실적을 평가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연1회) - 현재는 작목반을 평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26.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 Ⅰ.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시책 및 추진방향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설 우선 지원 ○사업성진단강화 및 진단결과 사업대상자 선정시 반영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시설보완 위주로 사업추진 ○중도사업포기자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강화 ○진단결과 적극 반영으로 부실운영 예방 ○유휴시설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사업추진의 내실화
○지원범위확대	○산지유통센터 설치 또는 운영자	○산지유통전문조직의 필요시설 우선 지원 ○규모가 200평이상이고 실제적으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설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역별 배치계획 정수외로 지원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운영활성화 ○저온유통기반시설, 간이집하장시설보완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과 생산자단체 소유의 시설 지원
○사업성진단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유통공사, 농협주관으로 사업성진단(시도는 협조)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심사시 진단결과를 적극 반영 - 유통공사, 농협, 시·도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	○사업부실화 사전예방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전체사업비의 1%범위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으로 사용	○컨설팅 강화로 시설이용 효율성 극대화
○농협계통 시설설치시농협 중앙회와 협의		○세부시설 설치전에 농협중앙회와 협의 하여 설치	○수확 후 관리기술 자문단과 사전협의
○심사시 가점부여	○깐마늘만 취급할계획(5점) ○깐마늘을 전체취급액의 50%이상취급계획(3점)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시설설치 및 보완시(10점)	○유통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자가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가점부여
○신청서류 구비		○산지유통센터설치 예정지 조서	○사업대상자 심사시 반영 - 부지확보된 신청자 우선지원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Ⅱ.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지원자격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이 있는 자	○산지유통센터운영조직 ○산지유통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지유통시설 보유자 포함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조직 포함
○등급별 지원한도액	○A등급(20억원) ○B등급(15억원) ○C등급(12억원) ○D등급(9억원) ○E등급(6억원) ○F등급(3억원) *인센티브 상위10% 범위에서 지원액의 50%추가지원	○A등급(30억원) ○B등급(20억원) ○C등급(15억원) ○D등급(9억원) ○E등급(6억원) ○F등급(3억원) *인센티브제를 삭제하고 A·B등급받은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매출규모확대에 따른 등급별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인센티브제 폐지
○자금지원 우선순위		○산지유통전문조직자금을 받고 있지 않으나 산지유통전문조직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최우선 지원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
○평가배점기준표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 신설 - 평가기준 신설 - 바코드 사용실적 - 파렛트 출하율 - 장부기록 등 전산화 노력 - 자체 손실보전기금의 조성규모	○평가기준 객관화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등 경영개선 노력 반영
○평가절차	○유통공사주관(농협,시도협조)	○유통공사 주관으로 하되 유통공사, 농협 시·도 합동으로 평가 - 단, 산지유통센터가 아닌 산지유통시설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유통공사, 농협주관)	○평가의 객관화
○가점부여		○산지유통거점조직과 연계하여 출하하는 사업장 : 5점	○정부시책 적극 참여 사업자에 대한 가점부여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Ⅲ.산지유통출하 선도금지원			
○사업분류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사업의무량	○지원금액의 250%이상 출하의무 부여	○지원금액의 220%이상 출하의무 부여	○사업의무부담율 완화
○지원한도	○법인 : 300백만원 ○개인 : 150백만원	○법인 : 400백만원 ○개인 : 150백만원	○규모있는 산지 유통인 육성
○지원시기	○연간 1회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	○산지유통인의 품목별 주요 출하 시기를 감안, 수시 지원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29.농축산물자조금 조성 지원			
○시책 및 추진 방향	○자조금 납입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전체구성원대비 납입 구성원 비율 : 80% - 전년도 조성액 중 연도내 사용액 비율 : 20%	○납입율, 연도내 사용비율을 고려한 차등지원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정하여 보조금 지원	○보조대상사업 실적에 따라 1:1 matching fund 형태 보조금 지급
○자조금조성 대상품목	○재배면적 상위 5개 시군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고,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 ○품목고시제 폐지	○사전고시제도 폐지(법개정)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면 대상 품목으로 인정
○자조금 지원대상 자조금조성단체의 범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자조금조성단체의 범위는 전국생산액 대비 자조금조성단체 출하율이 일정율(기준출하율)을 초과하는 단체	○자조금조성단체를 통한 출하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자들이 출하(또는 생산)하는 물량 (금액)을 기준 -재배면적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어있는 품목 : 기준출하율 50%이상 -재배면적이 전국지역에 분산된 품목 : 기준출하율 30%이상	○향후 관련법 개정 -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비중 2/3 이상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조직되면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개정 - 유통인,가공업자도 가입 가능 - 다만, 보조금지원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부분만 지원
○자조금의 사용 용도	○소비촉진, 수급조절, 출하조절 등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	○소비촉진, 공급조절 및 손실보전 등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증진목적으로 사용	○자조금의 사용용도는 자조금 조성단체에서 자조금 조성목적 범위내에서 자율 사용토록 함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1)</th><th>변 경 안(2002)</th><th>변경사유</th></tr>
<tr><td>○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범위 지정</td><td></td><td>○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사업
-산지폐기등 가격안정사업
-유통정보, 개발연구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사무국 운영경비</td><td>○ 자조금조성단체의 여론 반영</td></tr>
<tr><td>○ 자조금 지원금액 산출 근거</td><td>○ 납입구성원 비율(80%), 연도내 사용액 비율(20%) 가중치와 구성원 납입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table><tr><td>구 분</td><td>가중치</td><td>70% 미만</td><td>70~80%</td><td>80~90</td><td>90% 이상</td></tr><tr><td>납입구성원비율</td><td>80%</td><td>40%</td><td>56</td><td>68</td><td>80</td></tr><tr><td>연도내사용액비율</td><td>20%</td><td colspan="3">10%</td><td>20%</td></tr></table></td><td>○ 납입구성원 비율, 연도내 사용액 비율 폐지
○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집행액)에 한하여 100% 지원</td><td></td></tr>
<tr><td>○ 보조금신청</td><td>분기별</td><td>○ 연중신청이 가능토록 하되, 자금형편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신청토록 유도</td><td>○ 품목별 특성에 맞게 자금신청토록 함</td></tr>
<tr><td>30.채소수급안정 사업
4. 기 타
○ 사업범위</td><td>○ 노지채소</td><td>○ 노지채소, 시설채소</td><td>○ 시설채소를 수급안정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td></tr>
<tr><td>○ 사업방식</td><td>○ 계약재배(노지채소)</td><td>○ 계약재배(노지채소)
○ 약정출하(시설채소)</td><td>○ 시설채소가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채소의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 (약정출하) 추가</td></tr>
<tr><td>○ 사업규모</td><td>○ 4,500억원(노지채소)</td><td>○ 6,000억원(노지4,500, 시설 1,500)</td><td>○ 시설채소 약정출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td></tr>
<tr><td>○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td><td>○ 사업자금의 5%해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추가지원</td><td>○ 사업자금의 10~20% 해당액을 운영자금으로 추가지원</td><td>○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사업활성화 도모</td></tr>
</table>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31.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사업분류	○농축산물판매촉진	○농축산물판매촉진	
○지원대상품목	○김치, 신선채소, 인삼, 과실, 화훼, 전통장류, 축산물	○김치,신선채소,인삼,과실, 화훼,축산물	○국산원료 미사용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의 일부를 수출물류비로 지원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 물류 비용과 해당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조성사업 지원 - 수출조성사업은 예산액의 4%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수출판매촉진 지원과 관련된 부대업무 처리비용 최소화 인정(현지검역, 배 봉지구입, 교육비용 등)
○지원기준	(신설)	○원예부류 : 국가별 표준 물류비의 30%지원 - 신시장/신상품 개척, 수출단지육성, 품목특성고려 등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표준물류비의 5%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 ○축산물 : 포장상자 제작비의 40% 범위내 지원(단, 신규 수출시장 개척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장재비 및 운송비등 지원 검토)	○품목별 통일된 지원단가 마련 ○장기적 수출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축산물 중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 확대 촉진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33.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법인중 출자금 1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수출자금 지원불가 등 지원조건 규정(농림사업실시규정 제41조 별표3)	○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 명시('02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일반업체와 형평성 결여 ○ 수출 촉진 및 확대 취지에 부적합
□ 대출 최저한도	○ 최저 적재물량 및 금액 기준 설정 -1컨테이너 해당액으로 하되, 50백만원 이상	○ 최저한도 단일화 : 품목당 50백만원	○ 컨테이너 기준 적용은 품목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고가인 인삼, 밤, 송이 등과 배추 등 채소류를 동일한 물량기준으로 적용 곤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 경 사 유
34.축산물품질 향상			
Ⅰ.원료돈 구매 자금지원	(신규)	- 사업대상자 : 양돈농가 등과 계통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 ·자금회전율이 8회전이상 업체 - 사업물량 및 금액 : 315천두(392억원) - 지원조건 : 연리5%, 1년 거치 일시상환	신규사업
Ⅱ.육가공업체 시설지원	(신규)	- 사업대상자 : 고품질·위생적인 돼지고기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 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자 - 사업물량 및 금액 : 22개소, 28,500백만원(융자 19,950, 자담8,550) ·시설신축 및 증축(13개소) : 개소당 1,500백만원(융자 1,050, 자담450) ·시설개보수(9개소) : 개소당 1,000백만원(융자700, 자담300) - 지원조건 : 연리5%, 5년 거치10년균분상환	
Ⅲ.규격돼지·닭 출하촉진자금			
<돼지>			
ㅇ사업대상자		- 2002.1~12월기간중 동일 수출업체에 반기(6개월)동안 400두이상 규격돈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및 계열화업체 중 신청자	
ㅇ사업비		- 200억원	
ㅇ지원조건		- 연리5%, 1년후 상환	
<닭>			
ㅇ사업대상자		- 육계계열화업체 중 닭고기는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	
ㅇ사업비		- 50억원	
ㅇ지원조건		- 연리5%, 1년후 상환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35.축산물유통 개선지원사업			
Ⅰ.도축 도매시설			
1)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 기존도축장3개소 이상 통폐합	- 기존도축장 2~3개소 이상 통폐합	- 대상자 요건완화로 실효성을 높임
2)축산위생시설 (도축장HACCP)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비율 보조 70%, 자담30%	-보조50%, 자담50%	- 보조지원비율 축소
3)축산물물류 표준화사업	(신규)	- 축산물부분육가공장에 대한 포장자재비 등 지원	- 부분육상장표준 규격 제정고시('01. 3.15)에 따른 사업 활성화
Ⅱ.가공판매시설			
1)계란집하장설치 및 계란등급신설지원			
ㅇ사업대상자	(신규)	- 계란집하장 : 대규모 산란계 농가, 양계축협 등 생산자단체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ㅇ사업비		- 10,150백만원	
ㅇ지원조건		- 시설 : 연리5%, 5년거치 10년상환 - 운영 : 연리5%, 1년후 상환	
2)닭고기 부분육 가공시설			
ㅇ사업대상자	(신규)	- 사업대상자 : 육계계열화 업체중 도계장을 보유하고 냉장 닭고기 수출을 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시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ㅇ사업비		- 3,500백만원	
ㅇ지원조건		- 연리5%, 5년거치 10년상환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3)식육소매유통시설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 - 식육판매모범업소지원	- 식육소매유통시설로 통합	- WTO패널결과에 따라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원 종료
○지원액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 140~1,050백만원 - 식육판매모범업소 : 14백만원	- 시설개선 : 35백만원 - 시설설치 : 140~1,050 백만원	
7)닭고기체인점 설치지원	(신규)	- 융자70%, 자담30 - 개소당 975백만원 - 연리5%, 3년거치 5년상환	
8)돈가스 외식 프랜차이즈 설치사업 ○지원대상	- 농협, 도드람유통	- 생산자단체 및 돈가스 가공시설을 갖춘자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중 안·등심을 이용하여 돈가스를 가공하여 판매코자 하는 자	- 지원대상자 확대
9)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LPC, 도매시장·공판장	- LPC, 오리도축·가공장, 도매시장·공판장	- 2001년도 신규사업 지원대상(오리도축·가공장) 확대
○지원조건	-년리5~8%, 1년후 상환	- 년리5~5.5%, 1년후 상환	
10)오라·말 도축·가공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	- 오리도축·가공시설	- 오리도축장 및 말고기 가공장	
Ⅲ.축산물등급판정	- 등급거래지역(고시지역)의 확대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의무지역 확대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 -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 닭고기등급제 사전준비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Ⅳ축협조합경제 활성화사업			
○대상조합선정	- 신규선정위주	- 신규선정은 최소화하고 사업평가에 따른 추가자금 지원(지역조합은 한우 사업위주)	
○대상조합선정 절차	- 선정위원회 상정	- 중앙회 추천에 따라 농림부에서 승인	- 선정위원회 폐지
Ⅴ.직거래매취사업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품목조합 연합회, 영농법인 등	- 변경없음	
36.축산물안전 및 경영개선사업			
Ⅰ.가축질병근절 대책			
○사업종류	-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삭제)	-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 중단으로 사업 폐지
		- 지역축협 소독방제차량 지원사업	- 신규 지원
Ⅲ.가축방역			
○시책 및 추진 방향	- 외래성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강화	(삭제)	- 검역원 책특회계로 실시
○사업시행절차 - 예방약 지원 - 기생충 구제	- 예방약·기생충 구제제를 시도(시군)에서 입찰 구매 공급	- 예방약·기생충구제제 구매시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구입 공급	- 예방약 등 구매 방식 변경
Ⅳ.가축공제	- 소(생우3개월령이상), 말(종빈말), 돼지에 대한 공제실시 ·시가의 80%까지 지원	- 돼지의 보상범위를 질병에 의한 손해까지 확대(법정 전염병 제외)	- 돼지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38.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대·소규모지구>			
○사업내용	(신 규)	○저농약이상 친환경쌀 생산 하고자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 ○친환경쌀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계획에 반영 ○유기축산물생산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소규모지구 :종전 친환경 가족농단지>			
○지원조건	- 국 고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담 20%	- 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친환경농업마을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지원조건	○지원단가 : 45.4백만원 ○지원기준 : 국고80, 지방비20%	○지원단가 : 35백만원 ○지원기준 : 국고50, 지방비30, 자담20%	
39.농촌가공산업 육성지원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를 47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공공)」으로 통합
Ⅰ.농산물가공산업 ○근거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 개정됨
○지원대상	(신 규)	○년간 소비량의 10%이상을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 쌀을 이용한 업체 우선순위	
○사업타당성조사	○신규사업 참여시 현지 사업성을 유통공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 ○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 - 사업수행능력(20점), 제품의 수익성(0점)	○신규사업 참여시 현지 사업성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사전검토 강화 ○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 - 사업수행능력(10점), 제품의 수익성(10점)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개선요구 사항임」
○사업비관리 및 집행.정산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감면 또는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삭제)	○농림사업시행지침 1권에 수록된 「농림 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명시됨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Ⅱ.농촌특산단지육성			
○선정기준·우선순위	○신규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선정하되, 농촌부존자원 활용, 농업인 참여비율이 높은 단지, 고부가가치 제품·전통민속공예제품 생산이 가능할 경우에 선정 -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 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를 선정 지원	○신규단지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농촌부존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지역대표성, 지명도 및 상품화 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을 엄선하여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육성사업」과 「1농협1특산품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신규단지 조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단지의 시설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둠
	○기존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성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하되, 품목 또는 업종별로 통·폐합하는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농외소득증대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내실화에 집중 지원 - 농촌부존자원 활용, 전통민속공예품·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존단지의 시설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통민속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체에 우선지원 ○기존단지의 농산자재, 섬유직물 및 석재제품중 공산품 성격이 짙은 단지는 시설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보 측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만을 지원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40.농업종합자금 지원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지원	○ 사업명칭 변경 - 유사명칭이 많아 표절 우려
1.목 적	○ '01년에는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 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과 연계 운용 - 재원조달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토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삭제)	○ 자금제도 폐지로 자금구분 설명 필요없음.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체	○ 대상자에 선진 작목반(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용의 경우) 추가 -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경우 개별대출로 전환 바람직
	○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연계 운용에 따른 지원대상(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쌀분야 :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 포함) 기지원 유통가공시설 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사업자	○ 농기업경영 및 축산전업경영자금 '02년에 폐지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원예특작·축산분야 유통·가공·저장사업 : 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시설로 사업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기타 일반사업자 - 경주마사육 축산농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자	-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에 한하여 지원	
	※ 영농규모, 연령,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	(삭제)	○ 불필요한 문구 삭제
	(신설)	※ 지원제외 자격요건 - 해당사업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법인, 유통가공업자, 금융기관 총부채가 3억원 이상인 개인	○ 실제영농종사자 지원기회 확대 ○ 운영자금은 계열화 주관업체에서 부담하므로 운영자금 지원시 이중지원초래
		- 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상 설립요건충족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 등록(제재)중인 경우	○ 부실징후자 지원제한
		- 수산업, 임업(표고버섯 포함)종사자	○ 농기업경영자금에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표고버섯은 산림청지원과 중복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2)지원조건 ㅇ자금용도	•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	•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 (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일시상환)	ㅇ인삼식재자금 구분 변경 반영
	(신설)	※ 기존시설물 및 기조성 과수원 구입지원 불가	ㅇ자금의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기존 시설물 구입지원을 제한
	※ 토지매입자금 용도 제한 - 지목상 '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 용도제한 - (삭제)	ㅇ규제철폐를 반영
	- < 신설 >	- 노지 300평미만, 시설부지 100평미만 및 매입단위가 전업농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투기적매입방지 및 단계적 사업확장을 유도(매입상한설정) 및 소규모매입 방지
ㅇ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농산물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	ㅇ매취 및 수입액 지원제한 필요
ㅇ지원한도	ㅇ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이상(상한액 없음)	ㅇ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이상. 단, 금차투자사업이 전업농규모(법인의 경우 구성임원수 만큼 승하여 적용)를 초과할 경우 당해 초과사업비 및 당해 운영자금은 지원제외	ㅇ순차적 안정적 투자유도를 위해 투자규모 상한을 설정

구 분	현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나.사업추진체계	※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 사무소에는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는 표지를 부착	(삭제)	○ 실효성 측면에서 관련내용 삭제
3)취급자금	○ 농업경영종합자금, 농기업경영자금은 원칙적으로 전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축산전업경영자금은 축산분야에만 지원	(삭제)	○ 취급자금 구분 불필요 문구삭제
	※ 운영자금이나 개보수자금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의견조회를 하지 않음. 단, 인허가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운영자금이나 개보수 자금신청의 경우는 시·군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음 <이하 삭제>	○ 기존 시설개보수의 경우 공부상 면적 증가 없는 단순 시설교체 등으로 의견조회 생략 필요
3)심사방법	(신설)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아.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와 관련하여 매 반기별로 여신검사(loan-re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신용대표이사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업무추진실태를 매반기별로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농협내 감사지도부서 및 농림부에 보고	○ 대출업무 취급의 적정성 지도라는 당초 도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실태점검으로 대체바람직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원예특작분야 > 가. 지원대상사업			
○ 채소·화훼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예냉시설……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 콩나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시설에 포함
○ 과수	- 수급불안 우려품목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유자에 대해서는 신규과원조성 지원을 제한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 키낮은 밀식사과원, 부직포, 비가림시설, 방조망 설치 등 ·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발생에 따른 폐원조치로 타과종으로 작목전환할 경우 ※ 수급불안 우려품목으로서 2001년이후 신규조성된 과원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 제한 · 식재면적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2001년 이전에 조성한 과원의 시설·개보수·운영자금지원 가능	- 신규과원조성자금은 수급불안우려품목(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매실, 유자)의 경우 지원을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가능 ①키낮은밀식사과원 조성 ②'01.1.1.이전 조성 과원의 식재면적 증가가 없는 동일과종 개식의 경우 ③가지검은마름병 발생 과원(사과, 배) 폐원후 타과종으로 작목전환시 - 수급불안 우려품목으로서 '01.1.1이후 신규조성된 과원(키낮은 사과원제외)에 대한 시설·개보수 운영자금 지원제한	○ 자구수정(체계화)
나.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특 작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논에 벼이외의 타작물 재배 및 시설설치 지양 - 면적증가 없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협의 생략, 단, 인허가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시장·군수와 협의	(삭제)	○ 논에 벼이외의 타작물 재배 및 시설설치 제한 철폐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 시설원예분야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이하 파이프 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	○ 자동화온실1-2W-L형까지는 농업인의 자율시공을 허용하고 고액투자 온실은 적용
< 축 산 분야 > 가.지원대상사업			
	○ 양돈, 양계(육계·산란계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 지원을 제한(다만,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시까지로 함)하되,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재건축 포함)은 지원 - 개보수·운영자금은 계속 지원	○ 양돈, 양계(육계·산란계 포함)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설치자금지원을 제한(다만, 양돈분야의 경우 제한시기는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시까지로 함) - 개보수운영자금은 계속 지원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①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사업장 이전 및 노후시설의 개축(재건축 포함) ②남은 음식물사료화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가 양돈 시설을 설치할 경우 ③기존 종계장, 부화장중에서 규모화를 위해 전업종계장(사육규모 2만수 이상), 전업부화장(주당 20만수이상) 규모로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④기존 양계농가 중에서 계열업체와 계약하여 수출용으로 닭을 사육(3만수이상)하기 위해 시설을 증축 또는 신축 할 경우	○ 문구수정 ○ 수출경쟁력 제고 및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업화, 규모화를 위해 시설설치자금 지원 필요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45.후계농업인육성			
○지원대상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중 …… …… ……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인 자중… …… …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농업분야 병역특례 제도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지원단가	<신규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30~50백만원, 축산분야 20~30백만원, 기타 20~50백만원	<신규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삭 제	○지역특성 및 개인적 여건을 감안,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지원의 융통성 제고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30~6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수도작 40~60백만원, 축산분야 30~40백만원, 기타 30~50백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8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군의 예산형편 등에 따라 지원금액 하향조정 (20백만원까지) 가능	○지역특성 및 개인적 여건을 감안,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지원의 융통성을 제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자금지원을 융통성 있게 지원하여 사업부실을 최소화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경종농업분야>	(신설)	○후계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중 60%(사업비의 30%) 이내인 자금	○중장기 농업인력육성 세부과제 제출안 반영
	(신설)	○축사, 고정식온실·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 구입가능 - 이 경우 지방법원(등기소) 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 의무화	○기존의 영농시설물 이용율 제고 및 한정된 지원자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기존 영농시설물 및 중고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완화
	(신설)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 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임산물 생산 및 내수면 어업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지원대상품목이 불명확하여 담당 공무원의 질의가 빈발하여 명문화
○평가기준 <신규후계농업인>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신설)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재배 등)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가능	○재배품목이 희소하여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선인장 재배 등 특수작목 재배 농가에서의 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해소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학력 <여자의 경우> - 농대, 농전, 자영농과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농고졸업자 : 7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60점	○ 학력 <여자의 경우> - 농대, 농전, 자영농과, 농고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일반전문대학졸업자 : 7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60점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육훈련실적 <여자의 경우> - 2개월이상 : 50점 - 1개월이상 : 40점 - 15일이상 : 30점 - 10일이상 : 20점 - 5일이상 : 10점	○교육훈련실적 <여자의 경우> - 1개월이상 : 50점 - 15일이상 : 40점 - 10일이상 : 30점 - 5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영농경력 <여자의 경우> - 1년미만 : 0점 - 1이상 4미만 : 60점 - 4이상 5미만 : 60점 - 5이상 6미만 : 70점 - 6이상 7미만 : 80점 - 7이상 8미만 : 90점 - 8이상 : 100점	○영농경력 <여자의 경우> - 1년미만 : 0점 - 1이상 2미만 : 60점 - 2이상 3미만 : 60점 - 3이상 4미만 : 70점 - 4이상 5미만 : 80점 - 5이상 6미만 : 90점 - 6이상 : 100점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영농기반 <여자의 경우> - 1.5ha이상 : 170점 - 1.0ha~1.5미만 : 150점 - 0.5ha~1.0미만 : 120점 - 0.2ha~0.5미만 : 80점	○영농기반 <여자의 경우> - 1.0ha이상 : 170점 - 0.7ha~1.0미만 : 150점 - 0.5ha~0.7미만 : 120점 - 0.2ha~0.5미만 : 80점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
○가점사항	(신설)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수도작농지 매입한 경우는 2년이상 환경친화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20점 가산(총점 600점이내)	○고품질쌀생산 장려
○선정시 우선순위	(신설)	○사업시행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지원금액만 결정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중복평가 등 행정낭비 폐단해소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사후관리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 ……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전원에 대하여,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 기술교육 실시 - 영농종사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기정착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격년단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
	○ 신 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친후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인이 후계농업인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지원자금 회수	○시장·군수 등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동 사업대상자에게 15일이내에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 ……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시장·군수 등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단, 무단이주 등 영농에 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이내	○농한기 및 축산분야의 경우 가축출하후 15일이내에 가축을 재입식(영농종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 후계농업인 담당공무원의 건의를 감안, 이를 보완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47.농업경영컨설팅			
	○농업 경영체의...감안, 2001년도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농업 경영체의...감안, 컨설팅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 컨설팅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점진적인 저변 확대 추진	○시책 방향에 있어서 "컨설팅의 질 향상"과 "내실화" 추가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	※ 계약 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효일이 2001. 12. 31 이내인 경우 2003년까지 가능	※ 계약 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효일이 2002. 10. 31 이내인 경우 2003년까지 가능	○조기 계약 체결 유도 및 신속한 업무 추진
○지원내역	※지원대상컨설팅은... 결정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결정의 근거자료를...농림부에 통보	※지원대상컨설팅은... 결정함. (이하 삭제)	○보고자료 간소화
○컨설팅공급기관 업체 지정 - 신청 자격	(신설)	※컨설팅공급기관·업체 전문가팀은 이하에서 '컨설팅공급업체'라 칭함	○컨설팅 수행기관 이름을'컨설팅공급업체'로 단일화
	※컨설팅기관..내부 전문인력과 외부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1인은 1개 기관..를 포함, 3개 구룹까지만 참여 가능	※특정 컨설팅공급업체(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내부전문인력은 다른 컨설팅공급업체의 내부 전문인력이 될 수 없으며 여타 2개 컨설팅공급업체의 외부전문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함 - 단, 컨설팅공급업체의 대표는 1개의 외부전문가 그룹에만 참여할 수 있음 - 동일인의 외부전문인력 참여는 3개의 외부 전문가그룹까지만가능	○컨설팅공급업체 대표 등 내·외부 전문 인력은 본래 소속 되어 있는 업체의 컨설팅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타 업체 컨설팅 업무 참여 제한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컨설턴트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컨설턴트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컨설팅공급업체의 내부 인력과 외부인력은 농림부 또는 시·도(시·군)에서 개최하는 워크샵 등 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함	○컨설팅공급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워크샵 등 관련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계약체결 - 설명회 개최	○참가대상 (신설)	※선정된 지원대상 경영체는 설명회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설명회 참여를 통하여, 농가들의 컨설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 요청	○계약승인 요청 - 3년차 컨설팅사업 지원농가...재무제표 1부 (신설)	○계약승인 요청 - 3년차 이상 컨설팅사업 지원농가...재무제표1부 ○계약체결 건수 제한 - 1개 컨설팅업체·기관은 1개 시·도당 20건 이내, 전국 총 계약 건수 50건 이내로 체결 단,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시·도별 제한 건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총 계약건수 제한은 초과 건수만큼 적용하지 않음	○컨설팅사업이 3년 이상 실시됨에 따른 조정 ○컨설팅공급자별 계약체결 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컨설팅 수행의 질적 향상 유지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하고 농림부에 보고 ○사업비 지급방법 - (신설)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 ○사업비 지급방법 - 자부담은 시·도(시·군)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지급되도록 함	○농림부 보고 삭제 → 보고서류 간소화 ○자부담의 철저 이행 유도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사업비 집행방법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 계약금 : 경영현황 기술서 제출 후 현장 확인한 후...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 상황보고서 제출 후 .....상위점이 없을 경우 3일 이내 지급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 계약금 :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자부담금 입금 확인과.....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자부담 이행여부 등 컨설팅 수행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
	- 잔금 : 컨설팅결과 보고서 ....제출 후... 상위점이 없을경우 3일 이내 지급 (보조금 동률 병행 지원의 경우)	- 잔금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컨설팅결과 보고서 ....제출 후...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보조금 동률 병행지원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계약기간 종료 후로 명확히 설정
	- 경영현황기술서 제출 후 현장 확인후. .... 보조금 포함하여 지급 ※현장 확인 후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발견될 경우	-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제출 후.....보조금 포함하여 지급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서비스 수행계획서, 컨설팅 진상황(결과)보고서.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승인 요청시 제출하는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로 대체
	○보조금 교부 신청 - ....경영현황기술서.... ※계약 기간 만료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첨부	○보조금 교부 신청 -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계약 기간 만료 후 ... '컨설팅결과보고서'와 함께.....첨부	○결과보고서 → '컨설팅결과보고서' 제출서류 명확화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추진 일정			
	○본 지침 및 시·도 지침의 게시·공고 및 사업참가 신청 : 2001. 2. 15 까지	○본 지침 및 시·도 지침의 게시·공고 및 사업참가 신청 : 2002. 1. 31 까지	○조기 계약체결 유도 및 신속한 업무 추진
	○컨설팅 대상 경영체 선정 : 연중 수시신청	○컨설팅 대상 경영체 선정 : 2001. 2월말까지	
	○컨설팅 기관·업체지정 : 2002. 2월중순까지	○컨설팅 기관·업체 지정 : 2002. 2월말까지	
	○계약체결 절차 : 연중 수시	○계약체결 절차 : 계약 발효일이 2002. 10. 31 이내에서 수시	○계약 체결기간 제한에 따라 조정
○사업 취소 - 계약의 지원결정 취소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시장·군수의 심도 있는 사후관리 유도
나. 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결과 보고 : 매월말 보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지원 대상경영체 선정 결과 보고 : 3월말 보고 ※추가 선정의 경우 해당 월말 보고	○시장·군수의 심도 있는 사후관리 유도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48.농업직접지불제 Ⅰ.경영이양직접지불 ○지급대상	(신설)	○2002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조치 - 2001년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을 신청접수하여 지급하기로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된 지급대상자는 농지매도 또는 임대차 구분 없이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신청분에 대해서는 농지매도에 한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①연령이 많은 자 ②신청접수가 빠른 자 ③ 농지매도자	○2002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우선순위 근기 마련
○사후관리	(신설)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농지 수용시	○공공용지의 편입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지사유에 이를 포함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2.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신청자격>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기준이상 이행하는 농업인	전국의 무농약이상 인증농가 ※ 잔여사업량이 있을 경우 환경규제지역의 저농약 인증농가	논농업직불제와의 차별성 확보
<절차>	농가 신청서작성→작목반→시·군·구 제출	농가 신청서 작성→시·군·구 제출	인증농가 대상 지원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농지원부등 본인이 경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지급대상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또는 표시사용신고필증사본	인증 농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
3.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선정기준>	대상지역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친환경이행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	무농약이상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잔여사업량이 있을 경우 환경규제지역의 저농약 인증농가지원	논농업직불제와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요건 강화
<우선순위>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친환경이행면적이 넓고 농경지가 집단화된 작목반	무농약이상인증, 표시신고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잔여사업량이 있을 경우 환경규제지역의 저농약인증, 저농약표시신고 순으로 지원	인증농가 대상 지원
<선정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실태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및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 폐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Ⅲ.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2월말까지	○3월말까지	○농가에 신청기회 확대
- 대상자선정	○3월말까지	○4월말까지	○영농기장과 농업인 교육을 선택의무에서 필수의무로 강화
- 이행사항 점검	(신설)	○영농기장조사,농업인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 종합점검, 대상확정	(신설)	○지원대상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실시 : (시·군·읍·면)	○농가에 탈락자 열람으로 공정·투명행정 실시
○사업시행			
- 사업대상농지 선정		- 하천부지 (하천법상 하천 구역 안의 토지)	○하천부지라도 하천 구역안의 토지로만 대상제외 보조금 이중지급 방지
· 대상농지요건 대상제외	○하천부지	- 경영이양 직불보조금수혜 대상농지는 유리한 보조금을 선택하여 지급	○친환경적영농실천에 대한 공동책임제 실시로 친환경 영농의무 강화
· 대상농지 선정 절차마을협약 작성	(신설)	- 마을협약이행표 작성하여 주민에게 열람	
· 시행지침 시달	(신설)	- 친환경적 영농실천에 대한 부적격판정시 마을 협약단위 전체농가가 공동연대책임 (단, 친환경교육 및 영농기장 실천은 개별책임) 필수이행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달, 시·도지사에 통보	○기반공사, 농관원, 농진청은 검정시행지침을 수립 시달하고 행정기관에 참고토록 통보
- 사업신청 · 신청서류	(신설)	- 타지역거주자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거주지 읍·면에 제출	○타지역 거주 지주와 경작자와의 이중신청 방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대상농지적격 여부 확인 (읍·면)	○ 계속경작기간 확인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 - 농업인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시·군에 일괄확인 통보 조치	○ 신청자의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중복신청 방지
- 대상자관리	(신설)	- 지급대상자가 전출시, 전입지로 관련서류를 송부, 전입지에서 대상자 관리	○ 전입지 대상자관리를 통한 이중·중복신청 등의 부적격자 색출을 통한 보조금 이중지급 방지
○ 지급요건			
- 친환경적 영농실천의무			
· 비료과다 시비논 검정	(신설)	- 과다시비로 인하여 도복된 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단, 재해로 인한 피해 제외)	○ 친환경적영농의무 이행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증산 유발효과 방지
· 영농기장 실천	(신설)	- 비료·농약사용량 기재하는 영농기장 의무화	○ 〃
- 이행여부 점검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신설)	- 관외지역의 경우 부적합 없음을 통보	○ 서울시 등 농지소재지가 아닌 실 거주지역의 경우 "조사확인결과" 통보가 없어 가부판정 시비조정
· 토양 및 잔류농약 검사	(신설)	- 토양 검정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에 대한 조사계획 동시 수립·시행 - 적합한 경우 부적합 없음을 통보	
· 영농기장 실천 확인	(신설)	-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점검결과를 10월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진흥청에서 별도의 영농기장 시행지침을 수립시달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 기준	(신설)	- 부적합 판정시 마을 협약단위 전체농가가 공동연대 책임	○친환경적 영농의무 이행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증산 유발 효과 방지
	○ 제재기준 ·토양검정 부적격시 - 1차 : 중점관리 - 2차 : 경고 - 3차 : 보조금 지급중단 ·잔류농약검사 부적격시 - 1차 : 경고 - 2차 : 보조금지급중단	○ 제재기준 ·토양검정,잔류농약검사 부적격시 - 1차 : 경고 - 2차 : 보조금 50% 감액 - 3차 : 지급 중단 · 도복된 논 : 지원 제외 - 1차 : 경고 - 2차 : 지원제외	○ 〃
○2003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대상자 선정안내	(신설)	○2002년도 변경사항 - 비료·농약 사용량 기재 영농기장 의무화(선택적 의무→필수의무) - 친환경적영농의무이행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제 도입 (부적격발견시 제재조치) - 과다시비 도복논 재제 도입 - 친환경농업의무 기준강화 위한 예고제 실시	○친환경적 영농의무 이행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증산 유발효과 방지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50.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실제 노동 여부 확인	(신규)	○도우미 영농작업일지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득한 후 읍면에 지원금 신청	○출간농가와 농가 도우미간의 악의적인 공모 가능성 차단
		○도우미 이용신청서, 영농일지, 지원금 청구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회 수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는 문구 삽입	○ 〃
○신청기간	○출산 전·후 120일	○출산 전·후 180일	○도시여성근로자의 유급 출산휴가 90일 ○출산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이용 필요 시기 선택폭 확대
51.농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지원규모 및 조건	○관광농원 개발 연리 8.0% ○농촌민박마을 농가당15백만원이내	○연리 5.5% ○농가당15백만원이내, 단 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박마을은 추가지원 가능	○관계부처 협의결과 반영 ○'01.6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반영
<행정사항>			
나.사후관리 (2)개별사항 (가)관광농원개발사업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 등으로 잘 활용되도록 측면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 등과 연계한 상품개발등	○관광농원 운영의 내실화 지원 강화
	(신설)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 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 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품목판매, 전시장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관광농원의 효율적인 이용도모(건의사항 반영)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52.농공단지육성사업 가.사업내용 (2)지원대상	○공영개발 농공단지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농공단지통합지침 개정내용 반영
<행정사항> ○사후관리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농공단지 경쟁력제고
54.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통합
1.목 적	(신설)	○재해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재해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목적 신설
②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조건	(신설)	○1년이내, 연리 5.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 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 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1,500만원이내에서 지원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인삼식재자금 지원내용 신설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가.일반축산경영자금 ㅇ지원대상자	ㅇ부업규모 축산농가	ㅇ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ㅇ농업종합자금지원 관련 지원대상자 확대
다.재해대책경영자금 ㅇ지원대상자	ㅇ축산농가중 재해를 입은 농가	ㅇ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ㅇ농업경영자금에 일반 재해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ㅇ지원조건	ㅇ법령에 의한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해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로 판정된 경우 ※중앙지원(국고+융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당 ㅇ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축사의 붕괴, 가축의 도난·폐사 등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ㅇ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5.0%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ㅇ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가축의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지원금액	○호당 300만원~1억원 이내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액 ·법령에 의한 재해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지원액(보조+융자)과 피해액과의 차액 범위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보험금·공제금 및 정부지원액(살처분보상비 등)을 제외한 피해액의 50% 범위내	○호당 100만원~5천만원 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9.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대출제한대상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신설)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상근임직원(조합장, 계약직 직원포함)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개인의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	○농업경영자금에 일반재해대책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지원제한대상 확대 ○자금중복지원 제한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55.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Ⅰ.정주권개발			
가.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선정	(신설)	○녹색여가·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	○2001.6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반영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신설)	○시장·군수는 예산에 맞추어 매년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여 당해연도 완공 또는 효과 거양을 위주로 추진하고 부분구간 도로공사나 보수형태의 공사 등은 지양함	○분산투자를 억제하고, 집중지원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함
Ⅱ.문화마을 ○계획수립	(신설)	○문화마을조성은 단순한 주택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마을 정비중심의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추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생태마을 등) - 일감갖기사업과 연계하여 소득원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2001.6 농외소득증대 중장기추진계획 반영
Ⅱ.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방향	(추가)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공동)에 의거 추진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 및 유지관리를 명확히 함.
○사업시행의 변경	○물량변경으로 인한 5% 이내의 공사비 증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5%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삭제)	○사업비는 정액 지원되고 있고, 증액시는 지자체 재원을 투입하므로 불필요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제5권 〈공통사항〉 ○ 산림사업시행자 예산신청 방법 명시	-	○ 2003년 산림사업시행자 예산 신청방법 명시(조림·육림·임도)	○ 산림사업시행자 제도 활성화
○ 사업주관기관 변경	○ 시장·군수	○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을 사업주관 기관으로 함. (표고생산자금, 단기임산물,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 생산, 분재생산,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및 원자재 구입, 임산물생산직판장, 임업기계화, 조림용 묘목 생산, 독림가·임업후계자 육성)	○ 융자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 절차 간소화
61.임산소득증대			
○ 표고자목 지원 단가 인상	○ 112천원/㎥당	○ 154천원/㎥당	○ 재해복구비 단가와 통일 사업통합
○ 세부사업 명칭 변경	○ 원목재배단지, 톱밥 재배단지	○ 표고재배단지	
○ 밤작업로시설 차등 지원	○ 일괄 3백만원 이내/km당	○ 경사도기준으로(km당) - 10° 미만 2백만원 - 10° ~ 20° 미만 3백만원 - 20° 이상 4백만원	○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효율성 제고
○ 단기임산물 사업 내용 변경	○ 재배비 및 시설·자재비 지원	○ 재배비지원	○ 순수융자사업과 임산물 생산 단지 사업의 차별화 기준 마련
○ 임산물생산장비 지원사업 추가	○ 약제살포기, 간벌목 분쇄기, 표고자목천공기침수통 등 지원	○ 약제살포기, 간벌목분쇄기, 표고자목천공기 침수통, 밤재배지관수 시설 및 예초기 등 지원	○ 밤재배자 간담회시 건의 사항 반영
○ 밤작업로 우선 지원 기준 변경	○ 5ha이상 밤나무재배자	○ 3ha이상 밤재배자	○ 밤재배자 간담회시 건의사항 반영

구 분	현 행(2001)	변경안(2002)	변경사유
○분재 지원단가 인상	○51,100천원/ha당	○56,000천원/ha당	○지원단가 인상요인 반영
○산림복합경영 사업내용 변경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다용도 관리사시설 지원	○관리사 시설을 최소규모의 부대시설(창고) 지원으로 변경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를 위하여 관리사시설의 범위를 축소
○산림복합경영 사업비 한도액 증액	○109백만원/개소당	○150백만원/개소당	○산림복합경영 사업 의 한도액으로 통일
62.임산물이용·가공 및 보드류시설 지원			
○임산물이용·가공 시설 융자지원 한도액 조정	○기준단가 1,000백만원의 80%이내(한도액8억원)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임산물이용·가공 시설사업 활성화 도모
○세부사업내용 일부 삭제	○합판·보드류 시설 지원	○보드류 지원	○합판시설은 업계의 지원신청이 없고 기반 시설 확충이 완료된 단계이므로 삭제
○보드류시설 융자 신청기관 변경	○한국산업은행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재특회계에서 농특 회계로 회계 변경
○보드류지원 융자 비율 변경	○융자70%, 자부담30%	○융자80%, 자부담20%	○보드류사업의 원활한 을 위해 융자비율 자금리조정
○보드류지원 융자 금리 조정	○5.75%(변동금리)	○5%	
64. 임산물유통 개선지원			
○농림수산물류센터 사업기간 변경	○'99~2003(4개년)	○'99~2004(5개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
○여주유통센터 지원 내용 및 지원비율 추가	○국산재구입비	○국산재구입비, 가공(건조) 시설보완비, 기술개발비 지원(국고보조100%)	○국산재 가공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70. 산림자원조성			
○세부사업 명칭 일부 변경	○산림생태보전	○보호수정비	○사업명칭을 구체화

여 백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여 백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槪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보증부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ㅇ 연대보증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함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대출가능금액
ㅇ 부동산	ㅇ 감정평가액의 8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 아파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연립단독주택	ㅇ 감정평가액의 70%이내에서 〃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ㅇ 감정평가액의 40%이내에서 〃
- 기타부동산	ㅇ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예입액의 90%이내
ㅇ 공제증권	ㅇ 해지환급금의 90%이내
ㅇ 신용보증서	ㅇ 보증금액의 100%이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ㅇ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ㅇ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ㅇ 보증기금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ㅇ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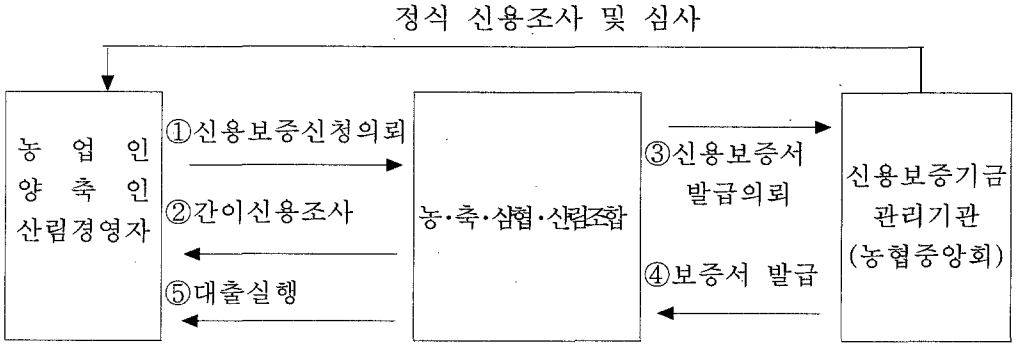

○ 보증한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개인 : 신용보증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누계액 15억원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7억원미만	7억원이상
간이신용조사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정밀조사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 상 담 보 물 종 류	대 출 비 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81 ~ 9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등창고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61 ~ 8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투자금액의41 ~ 6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등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정관 또는 규약					○	○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법인인감증명서					○	○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	△	△	○	○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	△	△	○	○	
	○ 월별공정계획표	○	○	○	○	○	○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		○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		○	
	○ 건축물대장		○		○○		○	
	○ 토지대장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지적도		○		○		○	
	○ 개별지가확인원		○		○		○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		○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건당) : 50,000원
- 가산수수료

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설정액	보수누진액	비 고
10백만원 까지	10,000원 가산	
20백만원 까지	13,000원 가산	
20백만원 초과 2억원 까지 20백만원마다	11,000원씩 가산	단수가 20백만원 미만은 절상
2억원 초과하는 경우 20백만원마다	10,000원씩 가산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20,000원 이상 50,000원 이내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1통마다 900원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5백만원 이하	면제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0,000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0,000원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5 억원 이하	150,000원
5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 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2 % - 0.5 %
- 법인 : 연율 0.4 % - 0.8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2. 고품질 쌀 관련 정의

※ 고품질 쌀과 관련된 해석기관은 농산과입니다.

□ 고품질벼 품종 선정

○ 농진청에서 농업인과 RPC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식미측정기(토요식미치)로 계측하여 고품질 품종 선정(28품종)**

- **고품질 벼 품종기준 : 식미측정기 70.6%이상으로 외관(쌀)은 추청벼이상, 식미(밥)는 일품벼 이상 품종**을 목표

□ 고품질쌀의 정의(농관원, 한식연)

○ 낟알이 충실하고 정립이외의 이물이 거의 없고 투명도가 높으며 **쌀 고유의 향미가 나는** 쌀로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취반시 윤기가 나고 적정한 찰기가 있는 쌀

○ 고품질쌀의 조건

- **단 백 질 : 7% 이하**(통상6~9%수준) → **질소시비량과 밀접한 관계**
- **아밀로스 : 17.5~18%**(통상17~24수준)
- **Mg, K** 등이 **많을수록 식미 우수**
- 싸라기, 분상질립이 적고 **완전립이 많을수록 우수**

□ 고품질쌀 생산여부 검정

① **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재배**(고품질품종구입, 재배여부)

② **질소질 비료 과다 시비여부**(토양검정, 稻体검정, 들녘별 관능검정, 도복여부 등)

③ RPC와 고품질쌀생산 계약여부(고품질 품종, 시비량 감축, 물관리)

2002년 도별 밥쌀용 재배품종(28종) 현황(농진청추천)

구분		품 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고품질 품종 (23)	조생종 (7)	상 미(98)	○	○	○	-	○	○	○	○
		중 화(95)	○	○	□	-	□	□	□	□
		중 산(00)	-	○	○	-	○	-	○	-
		삼 백(93)	○	-	▲	○	-	-	○	○
		오 대(82)	▲	▲	▲	▲	▲	▲	▲	-
		삼 천(95)	-	▲	-	-	▲	-	▲	-
		태 봉(00)	○	○	○	-	○	-	○	-
	중생종 (7)	금오벼2호(96)	-	-	-	○	○	○	○	○
		광 안(98)	▲★	▲★	▲★	▲★	▲★	-	▲★	-
		화 중(93)	▲	-	▲	○	-	-	-	-
		서 안(90)	◭★	▲★	▲★	◭★	-	-	-	-
		화 성(85)	▲	▲	▲	▲	-	▲	▲	▲
		삼 평(00)	○	○	○	○	-	-	○	-
		주 안(94)	○	-	▲★	○	○	-	▲★	-
	중만 생종 (9)	화 신(95)	-	-	-	○	○	○	-	○
		금 남(94)	-	-	-	▲★	▲★	▲★	▲★	◭★
		대 안(94)	○	○	▲	▲	○	-	○	-
		남 평(97)	-	-	-	▲★	▲★	▲★	▲★	▲★
		만 금(91)	-	-	-	□	□	□	○	□
		새추청(99)	○	-	○	○	-	-	○	-
		추 청(70)	○	-	○	○	○	-	○	-
		일 품(90)	◭	◭	◭	◭	◭	-	◭	-
		신동진(99)	-	-	-	○	○	○	○	○
양질 선호 품종 (5)	중생종 (2)	수 라(98)	○	○	○	○	-	-	-	-
		화 영(91)	-	-	-	○	○	○	○	○
	중만 생종 (3)	주 남(00)	-	-	-	○	○	○	○	○
		일 미(95)	-	-	-	▲	▲	▲	▲	▲
		동 안(96)	-	-	-	▲★	▲★	▲★	▲★	▲★

○ : 지역적응, □ : 건답직파, ▲ : 무논직파, ★ : 담수표면직파

※ 도별로 중산간지대이상은 조생·중생종, 평야지대는 중만생종 중심 추천

제2권으로 이어짐